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2017. 3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머 리 말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문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사적연금가입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적안전망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1

1. 연구배경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방법 및 구성 / 15

II.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 / 16

1. 현황 / 16
2. 문제 / 26

III.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 28

1. 조사방법 및 내용 / 28
2. 노후준비 실태 / 29
3. 연금가입 인식 / 37
4. 시사점 / 45

IV. 해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운용특징 / 47

1. 소득보장체계 / 48
2. 사적연금운용 / 58
3. 소결 / 83

V.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 85

1. 기본방안의 설정 / 85
2. 세부 개선방안 / 88

VI. 요약 및 결론 / 96

| 참고문헌 | / 98

| 부록 |

부록 I. OECD 국가의 자영업자 연금체계 / 102

부록 II. 미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 103

부록 III.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현황 / 105

부록 IV. 독일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 107

■ 표 차례

- 〈표 I -1〉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선행연구 / 14
- 〈표 II -1〉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가구주의 연간 가구소득 비교 / 18
- 〈표 II -2〉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 현황 / 18
- 〈표 II -3〉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실태(2015년 말 기준) / 19
- 〈표 II -4〉 자영업자 관련 퇴직급여보장법 규정 / 20
- 〈표 II -5〉 자영업자 대상 퇴직연금 운용체계 / 21
- 〈표 II -6〉 노란우산공제제도의 개요 / 22
- 〈표 II -7〉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특징 / 23
- 〈표 II -8〉 개인연금 상품(연금저축, 연금보험) 비교 / 24
- 〈표 II -9〉 종사상 지위별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 25
- 〈표 II -10〉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현황 / 25
- 〈표 III -1〉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개요 / 28
- 〈표 III -2〉 연령별 자영업 유형 / 29
- 〈표 III -3〉 자영업 유형별 소득 수준 / 30
- 〈표 III -4〉 소득계층별 자영업 유형 / 31
- 〈표 III -5〉 현재의 자영업 종사기간 / 31
- 〈표 III -6〉 과거 임금근로자 근무 여부 / 32
- 〈표 III -7〉 퇴직 후 현재의 자영업 개시 여부 / 33
- 〈표 III -8〉 직업군별 노후준비, 연령 및 평균소득(50세 이상 기준) / 34
- 〈표 III -9〉 노후준비 충분성(50세 이상 기준) / 35
- 〈표 III -10〉 노후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 35
- 〈표 III -11〉 노후 대비 상품 유형(1순위) / 36
- 〈표 III -12〉 부모님 부양의향 / 37
- 〈표 III -13〉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받을 의향 / 37
- 〈표 III -14〉 공사적연금제도 가입률 / 38
- 〈표 III -15〉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월납입액 / 39
- 〈표 III -16〉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에 대한 만족 수준 / 40
- 〈표 III -17〉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미가입 이유 / 40

■ 표 차례

- 〈표 Ⅲ-18〉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 41
- 〈표 Ⅲ-19〉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및 가입의향 / 43
- 〈표 Ⅲ-2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이유 / 44
- 〈표 Ⅲ-2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 45
- 〈표 Ⅳ-1〉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 비교(2016년 기준) / 49
- 〈표 Ⅳ-2〉 일본의 공적연금 가입대상 분류 / 52
- 〈표 Ⅳ-3〉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제도 비교(2016년 기준) / 60
- 〈표 Ⅳ-4〉 독일 뮐륵연금 시장규모 및 현황 / 61
- 〈표 Ⅳ-5〉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방식 비교 / 66
- 〈표 Ⅳ-6〉 일본 개인형 연금제도의 납입 한도액(월기준) / 68
- 〈표 Ⅳ-7〉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 최대 납입한도액 비교(2016년 기준) / 68
- 〈표 Ⅳ-8〉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 69
- 〈표 Ⅳ-9〉 뮐륵연금의 기여액 대비 세제혜택 / 71
- 〈표 Ⅳ-10〉 리스터연금의 세제혜택 / 72
- 〈표 Ⅳ-11〉 일본 개인형 DC제도의 세제혜택 / 72
- 〈표 Ⅳ-12〉 주요국의 디폴트펀드 운영현황 비교 / 77
- 〈표 Ⅳ-13〉 자영업자 사적연금 급여개시시점 및 지급방식 비교 / 81
- 〈표 Ⅳ-14〉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연금상품의 중도인출 및 대출 관련 규정 / 82
- 〈표 Ⅴ-1〉 기본방안의 모색 / 86
- 〈표 Ⅴ-2〉 세부방안의 설정 / 87
- 〈표 Ⅴ-3〉 사적연금(퇴직연금) 가입유도 / 88
- 〈표 Ⅴ-4〉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 90
- 〈표 Ⅴ-5〉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 91
- 〈표 Ⅴ-6〉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92
- 〈표 Ⅴ-7〉 영세자영업자 중심 재정지원 / 93
- 〈표 Ⅴ-8〉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 94

■ 그림 차례

- 〈그림 Ⅱ-1〉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16
- 〈그림 Ⅱ-2〉 사적소득보장체계상 문제 / 27
- 〈그림 Ⅲ-1〉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 42
- 〈그림 IV-1〉 미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 50
- 〈그림 IV-2〉 일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 53
- 〈그림 IV-3〉 독일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 56
- 〈그림 IV-4〉 영국 NEST제도의 가입대상 / 63
- 〈그림 IV-5〉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액 / 64
- 〈그림 IV-6〉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 65
- 〈그림 IV-7〉 영국 NEST제도의 보험요율 및 세제지원 / 70
- 〈그림 IV-8〉 미국의 디폴트 투자상품 / 74
- 〈그림 IV-9〉 영국의 Retirement Date Fund 운영구조 / 75
- 〈그림 IV-10〉 영국 NEST제도의 디폴트펀드 유형 / 76
- 〈그림 IV-11〉 미국과 영국의 디폴트펀드 운영성과 / 78
- 〈그림 IV-12〉 영국 NEST제도의 운용수수료 / 7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vate Income Security System for Self-employed

Corporate restructuring due to low interest rates and low growth is increasing self-employed. The share of self-employed among all the employees in Korea is 27.4%, which is very high compared with those in the US and Japan with similar pension systems. Especially, small self-employed who do not have employees occupy more than 70% of all self-employed, and they are more vulnerable than worker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pension system for self-employed who are exposed to the poverty risk is increasing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problem of securing old-age income for self-employed in terms of the organic role of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

In this respect, we conducted this projec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rivate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the old-age income of the self-employed.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 and problems of the self-employed's old-age income, examines the status of self-employed workers' retirement preparation and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through surveys, and examines the private income guarantee system of self-employed in countries similar to our pension system. And this study finds ways to improve the private income guarantee system for self-employed.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report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of self-employed and further enhance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요 약

I. 서론

-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노후 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함.
-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차원에서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에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준비실태, 해외의 자영업자 사적소득보장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

1. 현황

-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
 - 공적소득보장체계인 0층은 무기여연금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1층은 국민연금임.

○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2층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함.

–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란우산 공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상용근로자는 46.8%인 반면 자영업자는 5.4%로 매우 낮으며 자영업자의 49.3%는 공사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함.

2. 문제

■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업장 가입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부담이 가중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지원이 미흡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한 연금 운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가 존재함.

○ 노란우산공제 또한 안정적인 노후보장기능보다 사업재기 등 생활유지기능에 보다 목적을 두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은 미흡함.

Ⅲ.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1.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 고소득 자영업은 사업형 형태를, 중소득 이하 자영업은 생계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 가구(개인)의 연평균소득은 5,714만 원, 생계형 자영업으로 구분한 가구소득은 5,064만 원(3,692만 원)으로 조사됨.

○ 현재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의 경험이 있는 등 생애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74.7%,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종사기간은 평균 11.0년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비율은 56.4%이며 사업형과 생계형 자영업의 노후준비 비율은 각각 71.9%와 6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사무종사자, 자영업, 기타의 직업군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노후준비 비율은 90.5%, 66.3%, 56.4% 수준임.

○ 사무종사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모두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사무종사자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충분성은 매우 낮음.

– 노후준비가 불충분하게 된 이유는 ‘돈 쓸데가 많기 때문’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28.2%임.

2. 연금제도 가입현황 및 인식

■ 자영업자는 사무종사자에 비해 공사적연금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종사자 94.5%, 자영업자 82.9%가 공적연금에 가입한 반면, 개인연금은 각각 25.0%, 23.4%, 퇴직연금은 각각 32.3%, 0.6% 가입함.

- 연금납부액의 경우 자영업자와 사무종사자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적연금 월납부액은 사무종사자, 자영업자 각각 17.1만 원, 16.3만 원 수준임.

■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만족 수준은 48.6%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제혜택 외 추가적인 가입유인 제공이 요구됨.

IV. 해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운용특징

1. 소득보장체계

- 미국, 일본과 같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국민연금을 전제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됨.
 - 미국의 자영업자는 공적연금 가입이 당연가입이며 퇴직연금인 Keogh Plan, 3층의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연금에 가입이 가능함.
 - 일본의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제도에는 개인형 DC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있음.
- 독일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이지만 휘롭연금과 같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함.
 - 독일 일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법정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짐.
 - 특수직종에 속한 자영업자 등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님.

2. 사적연금 운용

- 대부분 국가가 자영업자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자영업자 임의가입형 사적연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추세임.
 - 미국의 전통형 IRA, 일본의 개인형 DC제도, 영국의 NEST 등에서는 사적연금 가입대상에 자영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반면, 미국의 Solo 401(k)제도와 Keogh Plan, 독일의 Rürup-Rente 등에서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사적연금 형태로 운용함.

- 가입 방식면에서 대부분 국가는 근로자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함.
 - 칠레는 2012~2014년 기간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 탈퇴의사 절차를 거치는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함.

- 일본 개인형 DC제도에서는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자영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운영함.
 - 일본 개인형 DC제도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까지, 자영업자는 월 ₩68,000까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
 - 대다수 국가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제도를 운용함.

- 미국은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에 대해 연금자산에 대한 대출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자영업자에 특화된 Solo 401(k)제도에서는 SEP IRA 등 다른 제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필요 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V.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적소득보장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함.
 -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자영업자 특수성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요구됨.
-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비재무적 지원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지원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은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 특수성, 근로자와 형평성, 자영업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요약 표-1〉과 같음.

〈요약 표-1〉 세부방안의 설정

구분	세부방안	
사적소득보장 체계개선 (공적연금 현체제 가정)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 유도 •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재정지원 •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 가입자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2. 세부 개선방안

가.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 유도

-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노후준비는 오히려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보다 요구됨.
 - 자영업자는 가입여부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어 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17년 제도도입 초기부터 자동가입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임의가입 시행 후 자동가입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자동가입형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

나.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므로 미국의 Solo 401(k)를 참조하여 중도인출 요건의 차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허용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사업재기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즉 중도인출요건을 이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 자영업자의 경우 투자정보를 접할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이해도가 부족하고 운용능력이 매우 미흡함.
 - 이러한 현상은 생계형 자영업자인 영세자영업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운용되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자영업자의 속성에 부합한 가입자 교육이 되도록 별도의 가입자 교육체계(교육 내용 및 방법) 마련이 요구됨.
 -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자영업자의 직업별 속성 및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형 퇴직연금(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수탁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디폴트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그 이유는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이해상충문제로 투자손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영업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수탁자 책임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수탁자 책임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마.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재정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동일한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임.
 - 근로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요구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바.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 현행과 같이 동일한 개인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 가입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은 장기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형 개인연금 도입 시에는 독일식 방식보다는 미국식 방식을 보다 지향

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의 당연가입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임의가입대상인 점, 그리고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I.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¹⁾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2015년 기준 556만 명)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는 크게 근로자와 자영업자²⁾ 중심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노후빈곤의 위험증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³⁾(생계형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의 노후빈곤 위험⁴⁾에 대처하기

1) 자영업자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자영업자는 종업원인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를 총칭하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주'와 동일함.

3) 중소기업청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를 연간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노동부도 유사한 개념을 사용함. 한편 김영미(2012)는 소득기준으로는 영세자영업자를 연간매출액 4,800만 원미만이거나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자영업주로 정의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정의함.

위한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연금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적안전망 제고 차원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검토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략 다음 같은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차원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고 이 틀 속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기초소득보장에 해당되는 국민연금(1층)에 가입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라는 직업적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용능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영세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보다 제고되는 방향으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연금체계가 개선되어 이들의 사적소득보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4) 201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빈곤율(처분가능소득기준)은 12.4%인데 반해 상용근로자의 빈곤율은 4.4%에 불과함(통계청(2015),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상의 문제,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등을 살펴본 후에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사적연금 운용 등을 토대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공적소득보장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김상진(2009), 김경아·한정림(2011), 전형배(2012) 등을 들 수 있다. 김상진(2009)은 국내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김경아·한정림(2011)은 국내 자영업자의 특성과 현황,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이력,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제고 및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해외의 연구로는 Choi(2009), European Commission(2010) 등이 있다. Choi(2009)는 OECD 회원국들의 자영업자 대상 연금제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European Commission(2010)은 유럽의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보험료 납부 기준, 사회보험제도의 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대상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사적영역을 포괄하여 진행한 연구들도 있는데, 김영미(2012, 2014), 김수완·김상진(20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영미(2012, 2014)는 독일과 영국 자영업자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관련 법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김수완·김상진(2012)의 연구는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 등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자영업자 관련 대다수 선행연구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이나 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공적 및 사적소득보장체계를 모두 검토한 후 종합적인 정책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적소득보장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표 I-1〉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선행연구

대상	저자	주요 내용 및 결론
공적 연금	김상진(2009)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회피 요인 및 정책방안 - 국민연금기여 회피비율: 일반 자영업자 < 저소득 자영업자 • 정책안: 저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 재고
	김경아·한정림 (2011)	•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 정책안: ① 보험료 면제 또는 부과기준 개선 ②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파악
	전형배(2012)	• 영국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법제 평가 - 영국의 자영업자 대상 공적연금제도 운영체계 • 정책안: 보험료 이원화(정액보험료 + 소득비례 보험료)
	김상호 외 (2015)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노후준비실태 • 정책안: 국민연금제도 개선 -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EC(2010)	•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 보험료 납부 기준, 공적연금 수급조건
공적 연금 및 사적 연금	김영미(2012, 2014)	• 영국과 독일의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법제 현황 및 과제 • 정책안: 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②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③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근로장려세제 활용
	김수완·김상진 (2012)	• 자영업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 연금사각지대에 속한 비율: 전체 자영업자의 40.6% • 정책안: 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②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영업자 가입 허용
	신화연(2012)	•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공사연금가입) 실태 조사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Choi(2009)	• OECD 국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법제 평가 - 자영업자 대상 연금제도 유형화, 국가별 사례 조사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 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노후준비 및 연금제도 인식 등을 살펴본 후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과 제반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3장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제상황과 노후준비 실태가 어떠한지, 사적연금의 가입의향 및 니즈는 어떠한지, 사적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전반적인 노후준비 실태와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식 및 니즈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제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검토한 후에 특히 사적연금의 역할제고 측면에서 사적연금 운영시스템을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부터 제4장까지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재정리하였다.

Ⅱ.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

1. 현황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직종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다. 즉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0층은 무기여연금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국민연금, 2층과 3층은 각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란우산공제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2017)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대상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	-------	------	----------

자영업자는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2층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개인연금 가입이 자율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성격을 보유한 노란우산공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일 등 선진국처럼 기본적으로 다층소득보장체계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공적소득보장체계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⁵⁾ 등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국민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소득활동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 및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분류에 따라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반면 고용한 임금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진다. 이러한 높은 부담은 영세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 회피요인⁶⁾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6년 7월에서 2017년 6월까지 하한 28만원, 상한 434만 원이다.⁷⁾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소득신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가입자에 비하여 축소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파악률이 낮다.⁸⁾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연간소득을 살펴본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는 상용근로자 가구의 68.9%(경상소득 기준 65.3%) 수준으로 낮았다.

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이에 포함됨.

6)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회피 유형으로는 납부예외와 체납을 들 수 있음.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납부를 추후로 미루는 것이며, 체납은 납부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증가하며 매년 7월에 갱신되어 다음 해 6월 말까지 적용됨.

8)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거나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초로 자신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됨. 신고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표 II-1〉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가구주의 연간 가구소득 비교

(단위: 연간 만 원, %)

가구주 경찰 유형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상용근로	5,927	6,717
자영업자	4,081(68.9)	4,386(65.3)
기타	3,169	3,381
합계	4,190	4,601

주: 1) 가구단위 소득(2014년 기준)임.

2) 괄호 안은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 비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⁹⁾ 10차(2014년 기준)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추정함.

축소신고 가능성과 낮은 소득과약물로 인해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징수율은 누적기준 99.4%, 당해연도 기준 98.2%로 매우 높으나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각각 90.0%, 65.3%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2〉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 현황

(단위: %)

구분	계	사업장	지역가입자
누적 ¹⁾	98.2	99.4	90.0
당해연도 ²⁾	93.8	98.2	65.3

주: 1) 국민연금제도시행 이후부터 2015년 말까지의 납부액 기준 징수 현황임.

2) 2015년 납부액 기준 징수 현황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5』를 참고하여 저자가 산출함.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성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가입현황(2015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57만 명 중 지역가입자는 38.5%인 830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중 납부예외자¹⁰⁾가 451만 명(20.9%)에 이어서 실질적인 납부자는 지역가입자의 45.7%(전체 가입자의 17.6%)인 379만 명

9) 복지패널자료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고 있어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표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10)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 기타 소득활동 미실시, 군복무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의미함.

(830만 명~451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소득파악으로 인해 납부예외 등 납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3〉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실태(2015년 말 기준)

(단위: 만 명, %)

구분	총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가입자 수	2,157	1,281	830(451)	24	22
비율	100.0	59.4	38.5(20.9)	1.1	1.0

주: 1) () 안은 납부예외자 수 및 비율.

2)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2,307만 명임.

나. 사적소득보장체계

1)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개인의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확대·변경하면서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은 동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으로써 2017년 7월 26일부터 허용된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동일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달리 자신이 퇴직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존재한다고 하겠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자영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현행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

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로서 자기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과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Ⅱ-4〉 자영업자 관련 퇴직급여보장법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6조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의 사유에 관계없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근로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영업자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가입자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자영업자 대상 퇴직연금 운용체계를 보면 〈표 Ⅱ-5〉과 같다. 먼저 부담금 납입방법은 자기부담방식이며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금 납입을 통해 이루어진 적립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과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급여형의 경우처럼 일시금 또는 55세 이상자에게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적립금을 일정범위 내(적립금의 50%)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이처럼 적립금의 운용과 중도인출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Ⅱ-5〉 자영업자 대상 퇴직연금 운용체계

구분	운영체계	특징
부담금 납입방법	자기부담	1,800만 원 한도(2016년 이후)
적립금 운용방법	확정기여형 준용	근퇴법 제21조
급여별 수급조건	확정급여형 준용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5년 이상의 연금지급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	근퇴법 시행령 제2조

2) 노란우산공제 및 개인연금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사망 등을 원인으로 한 생계위협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7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¹¹⁾ 기업의 경영상 위기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중소기업 공제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일반적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장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한적이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감독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있는 일반공제제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입대상 및 공제금 지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기업 판단기준이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평균매출액 규모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¹²⁾ 업종별 연평균(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의 기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표 Ⅱ-6〉 참조).¹³⁾

11) 2016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8.1만 명, 누적부금은 6조 1,500억 원에 달함.

12) 다만, 2015년 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됨.

13)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표 II -6〉 노란우산공제제도의 개요

구분	세부내용		
공제목적	• 생계위협 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업종	상시근로자 수 (2015년)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 원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명	이하
	제조업(펄프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 원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이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명	50억 원
	도·소매업	10명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 원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부동산임대업	10명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 원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10명	이하
기여금 납입	• 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공제금지급	• 폐업, 사망, 질병, 노령 시: 일시금지급원칙(분할금 인정)		
세제혜택	• 200만 원~5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기여금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은퇴 후 납입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원금은 전액 적립되고 복리이자율이 적용을 받아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분할은 5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에 허용되며 5년, 10년, 15년의 기간에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된다. 이러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및 노령 등을 이유로 지급될 수 있으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 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사업소

득을 기준으로 차등화되었다. 즉, 2017년 이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가입자의 사업 소득과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300만 원 한도 유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연금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자영업자 혜택이 미흡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7〉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특징

구분	세부내용
운영목적	• 연금에 의한 안정적 노후생활과 괴리: 생계위협 및 사업재기 초점
수혜대상	•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운영: 영세자영업자 혜택 상대적 미흡
지급형태	• 일시금 지급 원칙 지향: 목돈마련
공제성격	• 공적 사회안전망제도 성격: 종합보장형 공제 상품화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등과 같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간 납입금액의 4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업권별로 수령방식, 원금보장, 예금자 보호, 수수료 부과체계¹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표 II-8〉 참조). 한편,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상품은 납입단계에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14)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임.

〈표 II-8〉 개인연금 상품(연금저축, 연금보험) 비교

구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	생명보험
상품명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보험
수령방식 (연금)	종신 또는 확정	확정 (최대 25년)	확정	확정	종신 또는 확정
원금보장	보장		보장	미보장	보장
예금자 보호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세제 혜택	- 납입: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세 포함) - 수령: (1) 연금: 연금소득세(3.3~5.53%, 지방세 포함) (2) 연금 외: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 납입: 없음 - 수령: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주: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연령(연금수령일 기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음(확정형 연금은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며, 종신휘연금의 경우는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를 적용).

현재까지는 자영업자를 전수 조사한 개인연금 가입현황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방법이나 가입률은 일부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40세 이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설문조사(2013)¹⁵⁾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73.1%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공적연금(45.0%), 부동산(20.5%), 개인연금(18.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9〉 참조). 또한,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사업주의 노후소득 준비여부를 조사한 보건사회연구원(2012)¹⁶⁾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22.6%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15) 통계청 보도자료(2013. 6. 21).

16) 박종서 외(2012); 신화연(2012).

〈표 II-9〉 종사상 지위별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공적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부동산	기타	합계	
상용근로자	77.6	23.1	17.4	15.6	19.0	91.4	8.6
자영업자	45.0	18.7	15.4	20.5	5.2	73.1	26.9
- 고용원 유	62.8	28.6	22.1	25.0	7.2	86.6	13.4
- 고용원 무	40.1	16.0	13.6	19.3	4.6	69.4	30.6

주: 기타 노후준비방법은 주식, 펀드, 채권 및 선물 등임.
자료: 통계청(2013).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률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10〉과 같다. 이에 의하면,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46.8%인 것에 비해 자영업자는 5.4%로 매우 낮았다. 반면 공사연금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연금사각지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표 II-10〉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현황

(단위: %)

가입유형	자영업자여부			전체
	상용근로	자영업자	기타	
공사연금 모두 가입	46.8	5.4	4.6	18.2
공적연금만	47.4	43.9	27.8	36.5
사적연금만	1.4	1.3	1.3	1.3
공사연금 모두 미가입	4.4	49.3	66.4	4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가입한 경우임.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 하나라도 가입한 경우는 사적연금가입으로 함.
3)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가입한 경우는 가구 가입으로 함.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10차(2014년 기준)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추정함.

2. 문제

자영업자대상 소득보장체계의 문제로는 공적소득보장체계의 문제(국민연금 등 공적보장 기능 취약)와 사적소득보장체계의 문제(자영업자의 사적보장체계 미정비, 노란우산공제의 소득보장 기능 취약)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가. 공적소득보장체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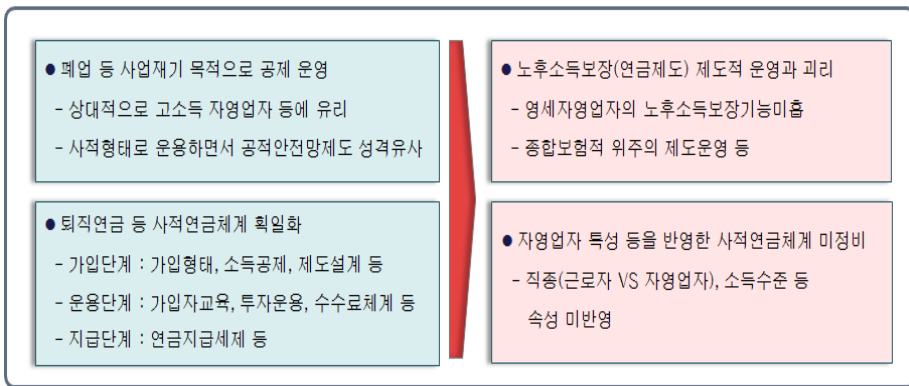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사업장 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공적보장이 취약한 실정이다. 즉,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부담이 가중되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보험료지원 미흡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에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1층의 국민연금 가입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2층 및 3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 사적소득보장체계 측면

자영업자는 개인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적연금 가입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의 운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적연금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

되어 있지만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만 허용되어 있을 뿐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차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II-2〉 사적소득보장체계상 문제



또한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닌 노란우산공제 역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보다는 사업재기 등 생활유지기능에 보다 목적을 두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장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중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정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동 조사의 기본목적은 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 추세를 조사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총 1,200명(자영업자 158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내용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 2016년에는 기본조사와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자영업자 노후준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18일 ~ 2016년 6월 17일(약 1개월)이다.

<표 Ⅲ-1>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1,200명 대상)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자영업자 표본 수: 총 1,200명(유효표본)
조사내용	- 기본조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등 - 자영업자 관련 조사: 자영업자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실태, 제도 인식 등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6년 5월 18일~2016년 6월 17일(약 1개월)

주: 세부사항은 ‘보험연구원(2016),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참조.

2. 노후준비 실태

가. 자영업자 유형 및 경제상황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 형태를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은 자영업자가 사업주라는 점에서 사업형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과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생계형 자영업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 연령별 자영업 유형

(단위: %)

구분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사업형)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생계형)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
전체(158)	28.5	47.5	24.1
20대(4)	0.0	100.0	0.0
30대(12)	25.0	66.7	8.3
40대(38)	26.3	34.2	39.5
50대(55)	38.2	38.2	23.6
60세 이상(49)	22.4	59.2	18.4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빈도 수가 낮은 20대 및 30대의 통계치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이하 동일).

설문조사 결과, 생계형 자영업은 전체 자영업자의 71.5%(1인 자영업 47.5%, 무급 가족 종사자 있는 자영업 24.1%)로 사업형 자영업 28.5%의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기준으로 사업형 자영업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6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하여 직장에서 퇴직하여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형 자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의 경우는 50대에서 60세 이상이 되면서 오히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형 자영업의 전환 혹은 생계형 자영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 가구(개인)의 연평균소득은 5,714만 원(4,198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사업형과 생계형 자영업으로 구분한 가구(개인)소득은 각각 7,346만 원(5,468만 원), 5,064만 원(3,69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약 53.2세였으며,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형이 생계형 자영업보다 일반적으로 가구 및 개인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Ⅲ-3〉 자영업 유형별 소득 수준

(단위: 만 원, 세)

구분 사례 수	전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사업형)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생계형)			
			소계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	
평균	가구	5,714	7,346	5,064	4,299	6,574
연간소득	개인	4,198	5,468	3,692	3,351	4,366
연령		53.2	53.0	53.3	53.6	52.6

이러한 가구 소득을 3가지 소득계층¹⁷⁾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과 자영업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득층일수록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즉 ‘사업형’ 자영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소득 이하는 생계형 중심으로 자영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17)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은 3,000만 원 미만, 중소득은 3,0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 고소득은 6,000만 원 이상으로 간주함.

〈표 Ⅲ-4〉 소득계층별 자영업 유형

(단위: %, 세)

구분 사례 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사업형)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생계형)			현재 연령
		소계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종업원은 없지만 무급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	
전체(158)	28.5	71.5	47.5	24.1	53.2
저소득(29)	13.8	86.2	79.3	6.9	58.9
중소득(73)	23.3	76.7	45.2	31.5	54.0
고소득(56)	42.9	57.1	33.9	23.2	49.2

주: 1) ()안은 사례 수임.

2) 소득계층은 보험소비자 조사자료에 따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은 3,000만 원 미만, 중소득은 3,0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 고소득은 6,000만 원 이상으로 함(이하 동일).

한편,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의 종사기간은 '7~15년 미만'이 34.8%로 가장 많다. 특히, 소득계층별 자영업 종사기간을 보면, 저소득층 17.2년, 중소득층 14.22년, 고소득층 12.1년으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자영업 종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현재의 자영업 종사기간

(단위: %, 년)

구분	3년 미만	3~7년 미만	7~15년 미만	15~25년 미만	25년 이상	평균
전체	6.3	14.6	34.8	31.0	13.3	14.0
저소득	6.9	6.9	31.0	31.0	24.1	17.2
중소득	5.5	16.4	24.7	42.5	11.0	14.2
고소득	7.1	16.1	50.0	16.1	10.7	12.1

또한, 자영업 종사자 중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74.7%이어서 전생애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종사기간은 평균 11.0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임금근로

종사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볼 때 노후준비가 덜 된 저소득층의 경우 퇴직 이후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6〉 과거 임금근로자 근무 여부

(단위: %, 연)

구분		있다	없다	평균
전체		74.7	25.3	11.0
연령	20대	25.0	75.0	2.0
	30대	75.0	25.0	5.4
	40대	81.6	18.4	8.3
	50대	85.5	14.5	10.7
	60세 이상	61.2	38.8	16.0
가구 소득	저소득	48.3	51.7	12.9
	중소득	75.3	24.7	11.6
	고소득	87.5	12.5	9.7

다음으로 퇴직 후 현재의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비율)은 62.7%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50대와 60세의 경우 각각 68.1%, 56.7%로, 이들 집단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한 비율로 추측할 수 있다. 퇴직 후 현재의 자영업을 시작한 연령의 평균은 39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시작연령이 높아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현재 연령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을 선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Ⅲ-7〉 퇴직 후 현재의 자영업 개시 여부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시작연령	현재연령
전체		62.7	37.3	39.0	53.2
연령	20대	100.0	0.0	22.0	25.5
	30대	77.8	22.2	31.6	37.2
	40대	54.8	45.2	37.0	46.0
	50대	68.1	31.9	39.4	54.3
	60세 이상	56.7	43.3	44.1	63.8
가구 소득	저소득	50.0	50.0	41.0	58.9
	중소득	63.6	36.4	39.3	54.0
	고소득	65.3	34.7	38.2	49.2

나.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일반적으로 50대¹⁸⁾에서 본격적인 노후준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50대 이상 조사 대상자의 노후준비 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의 노후준비 비율은 56.4%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사무종사자,¹⁹⁾ 자영업, 기타의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 90.5%, 66.3%, 56.4%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자영업자를 앞에서 구분한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나누어 볼 때 각각 71.9%와 63.9%로, 생계형 자영업의 노후준비 수준은 사무종사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연령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연령을 살펴본 결과, 사무종사자는 55.1세, 자영업자는 58.8세(사업형 56.9세, 생계형 59.6세)로 사무종사자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집단 간 노후준비 격차가 연령에 의한 것보다 직업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사무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해 보면, 각각 6,083만 원,

18) 부부의 은퇴설계관심은 자녀대학 이후 자녀독립기(50~6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가구의 실질적인 노후준비 시점은 자녀결혼 후(31.9%), 자녀교육 끝난 후(24.7%), 집 장만 후(20.5%) 등 50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음(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강성호 외 2016).

19)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직업유형이 다양하여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은 사무종사자로,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은 생산종사자로 정의함.

5,075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3,975만 원으로 사무종사자의 65.3%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생계형 자영업자는 사무종사자에 비해 소득수준도 낮고 또한 이미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노후준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노후빈곤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심층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8〉 직업군별 노후준비, 연령 및 평균소득(50세 이상 기준)

(단위: %, 세, 만 원)

구분	노후 준비 여부		현재 연령	연평균 가구소득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전체	56.4	43.6	59.5	4,079
사무종사자	90.5	9.5	55.1	6,083
자영업	66.3	33.7	58.8	5,075
- 사업형	71.9	28.1	56.9	7,549
- 생계형	63.9	36.1	59.6	3,975
기타	47.5	52.5	60.6	3,434

주: 직업유형으로 사무종사자는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으로, 생산종사자는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으로, 기타는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으로 조사됨.

노후준비의 충분성을 사무종사자와 생계형 자영업자의 두 집단²⁰⁾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사무종사자는 8.8%, 생계형 자영업자는 4.3%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는 사무종사자에 비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 사무종사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퇴직 전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표준집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생계형 자영업자를 사무종사자와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음.

〈표 Ⅲ-9〉 노후준비 충분성(50세 이상 기준)

(단위: %)

구분	노후준비 충분성				전체
	충분	불충분	보통	불충분	
전체	7.5	92.5	54.9	37.6	100.0
사무종사자	8.8	91.2	64.9	26.3	100.0
자영업	11.6	88.4	58.0	30.4	100.0
- 사업형	26.1	73.9	39.1	34.8	100.0
- 생계형	4.3	95.7	67.4	28.3	100.0

주: 충분성 여부는 조사 당시 5점 척도(매우 불충분=1, 불충분=2, 보통=3, 충분=4, 매우 충분=5)로 조사한 것 중에서 '충분'과 '매우 충분'을 '충분'으로 재분류한 것임.

노후준비가 불충분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시급히 돈 쓸데가 많기 때문'²¹⁾이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28.2%로 나타났다. 이를 사무종사자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불충분한 이유에 대한 우선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2%로 사무종사자에 비해 12.5%p 많았으며, 사무종사자의 경우는 '아직 젊어서'라는 응답이 25.3%로 자영업에 비해 22.7%p 많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자영업자의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중·고령자라는 점에서 노후준비가 시급하다.

〈표 Ⅲ-10〉 노후대책이 불충분한 이유

(단위: %)

구분	시급히 돈 쓸데가 많아	소득이 너무 낮아서	아직 젊어서	부채 상환 위해서	관심이 부족 해서	투자 실패로 자금 부족	소비 지출 관리 실패	공적 연금으로 충분
전체	54.4	28.2	9.5	2.5	2.1	1.7	0.8	0.8
사무종사자	50.7	18.7	25.3	4.0	0.0	0.0	0.0	1.3
자영업	63.2	18.4	2.6	2.6	7.9	5.3	0.0	0.0

21) 여기에서 시급하게 돈을 쓸데가 많기 때문은 부채상환, 투자실패로 인한 자금 이외에 긴급자금, 즉 결혼자금,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을 의미함.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노후대비 상품)의 유형을 보면, 전체 기준으로 볼 때 공적연금 가입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로활동이 14.0%로 나타났다. 사무종사자와 자영업으로 구분하여 두 유형을 비교하면, 먼저 공적연금 가입률의 경우 사무종사자는 52.7%였으나, 자영업자는 35.7%여서 사무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17%p 정도 낮았다. 다음으로 근로활동 비율의 경우 사무종사자는 13.9%였으나, 자영업자는 21.4%로 사무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근로활동 비율이 7.5%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불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Ⅲ-11〉 노후 대비 상품 유형(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공적 연금	근로 활동	은행 예금	연금 저축	부동산	퇴직 연금	보험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전체	577	44.9	14.0	12.3	9.2	8.0	5.9	5.0	0.5	0.2
사무종사자	201	52.7	13.9	6.5	7.0	5.0	11.9	2.5	0.5	0.0
자영업	98	35.7	21.4	9.2	11.2	14.3	1.0	7.1	0.0	0.0

다음으로 은퇴 후 가족 부양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향후 은퇴한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양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4.8%로 ‘부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34.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사무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부양의향이 있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사무종사자는 42.9%, 자영업 32.9%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부양의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서의 설명과 같이 연령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가 사무종사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고연령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노후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소득은 적고 연령은 높아 부모를 부양할 여력은 상당히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까지 고려한다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향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2〉 부모님 부양의향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34.8	30.6	34.6
사무종사자	368	42.9	34.2	22.8
자영업	158	32.9	27.8	39.2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향후 은퇴 시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지 물어본 결과,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이 61.4%(사무종사자는 67.1%, 자영업자는 6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도움없이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앞으로는 자녀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이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 기준으로 11.9%였으며, 사무종사자는 8.2%, 자영업자는 12.0%로 나타났다. 사무종사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는 스스로 노후생활의 자립도가 더 낮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3〉 은퇴 후 자식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받을 의향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있음	보통	없음
전체	1,200	11.9	26.7	61.4
사무종사자	368	8.2	24.7	67.1
자영업	158	12.0	21.5	66.5

3. 연금가입 인식

여기서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서 공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의향 및 선호 등 소득보장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 성향과 신규 사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연금제도 가입 실태

설문조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연금제도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79.9%(특수직역연금 포함 시 82.2%)였으며, 개인연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은 21.5%, 퇴직연금은 16.2%로 나타났다. 이를 사무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률은 사무종사자 94.5%, 자영업 82.9%였고, 개인연금 가입률은 사무종사자 25.0%, 자영업 23.4%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무종사자 32.3%, 자영업 0.6%²²⁾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사무종사자에 비해 연금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표 Ⅲ-14〉 공사적연금제도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공적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 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전체	1,200	79.9	2.3	21.5	16.2
사무종사자	368	90.2	4.3	25.0	32.3
자영업	158	82.3	-	23.4	-
- 사업형	45	91.1	-	28.9	-
- 생계형	113	78.8	-	21.2	-
기타 ¹⁾	674	73.7	-	19.1	11.0

주: 기타에는 생산종사자(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이 포함됨.

자영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월납입액을 중심으로 사무종사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2) 현재 자영업자이지만 과거 근로자였던 자가 퇴직연금계좌(IRP)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

공적연금의 경우 사무종사자는 월 17.1만 원, 자영업자는 월 16.3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 간 납부액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사무종사자는 월 32.3만 원, 자영업자는 월 40.9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영업자의 납부액이 사무종사자에 비해 월 8.6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월납입액

(단위: 만 원, %)

구분	공적연금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금액	빈도	금액	빈도
전체	15.5	972	31.8	257
사무종사자	17.1	341	32.3	92
자영업	16.3	131	40.9	37
- 사업형	17.9	41	44.3	13
- 생계형	15.6	90	39.1	24

주: 1) 퇴직연금의 월납입액은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음.

2) 월납입액이 존재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개인연금가입자를 중심으로 제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8%로, 불만족하다는 응답(3.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에 대한 만족 수준을 사무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무종사자는 44.6%, 자영업자는 48.6%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러한 만족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에 대한 만족 수준

(단위: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3.5	45.7	50.8
직업	사무종사자	4.3	51.1	44.6
	자영업	8.1	43.2	48.6
가구 소득	저소득	0.0	57.9	42.1
	중소득	3.5	51.4	45.1
	고소득	4.2	34.7	61.1

한편, 개인연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에 대해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13.3%)’, ‘현 시점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12.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세제지원 부족’으로 인해 미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기존처럼 단순히 세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유형 및 가구소득별로 미가입 이유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17〉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미가입 이유

(단위: %)

구분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여서	현 시점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자산 가입(보유)이 더 유리해서	세제 지원이 부족해서
전체		61.8	13.3	12.2	9.6	3.2
직업	사무종사자	55.8	18.1	11.6	9.8	4.7
	자영업	55.4	15.7	9.1	15.7	4.1
가구 소득	저소득	72.9	8.1	10.5	6.1	2.4
	중소득	59.8	14.9	10.9	11.3	3.1
	고소득	53.5	15.7	17.1	9.7	4.1

나. 사적연금 가입 인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니즈(가입 의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았다.

하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가입하도록 하는 자영업자 맞춤형 (특화형) 개인연금(예: 독일 뮌헨연금)을 제공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아직 도입 계획이 없는 경우(미도입 개인연금)이나, 후자는 2017년 7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먼저,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가입의향은 35.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가입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에 비해 중소득층, 고소득층에서 가입의향이 다소 높았지만, 가입유인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8〉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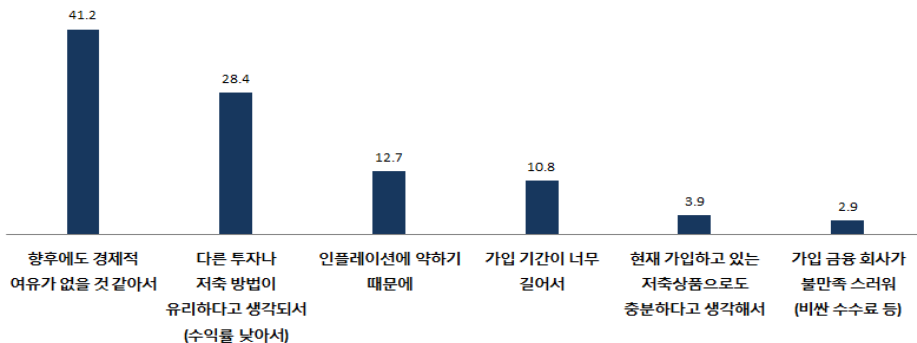
구분		가입할 의향 있다	가입할 의향 없다
전체		35.4	64.6
연령	20대	0.0	100.0
	30대	58.3	41.7
	40대	47.4	52.6
	50대	40.0	60.0
	60세 이상	18.4	81.6
가구 소득	저소득	13.8	86.2
	중소득	43.8	56.2
	고소득	35.7	64.3

한편,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수익률이 낮아서)’가 28.4%로 조사되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볼 때 중소득,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가입의향이 낮다’는 응답도 상당하였지만, 이들의 경우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수익률이 낮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소득 이상의 자영업자는 세제혜택 외 추가적인 유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이들 연령대의 자영업자는 면세자가 많아 세제혜택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세제혜택만으로 가입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 맞춤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

(단위: %)



주: 총 빈도수는 102개임.

다음으로,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인지와 가입의향에 대한 것이다.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15.2%로 매우 낮았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전인 40, 50대에서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지비율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할 의향 또한 36.1%로 매우 낮았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전인 40, 50대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의향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대한 인지 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중소득층에서 가입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유인과 다르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Ⅲ-19〉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지 여부 및 가입의향

(단위: %)

구분		인지	가입의향
전체		15.2	36.1
연령	20대	0.0	25.0
	30대	16.7	50.0
	40대	13.2	39.5
	50대	23.6	43.6
	60세 이상	8.2	22.4
가구 소득	저소득	3.4	24.1
	중소득	15.1	47.9
	고소득	21.4	26.8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익률이 낮아서'가 23.8%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이유

(단위: %)

구분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수익률이 낮아서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인플레이션 에 약하기 때문에	현재 가입한 저축상품으 로도 충분	가입 금융회사 불만족
전체		32.7	23.8	21.8	12.9	5.9	3.0
연령	20대	0.0	66.7	0.0	0.0	0.0	33.3
	30대	16.7	50.0	0.0	0.0	33.3	0.0
	40대	34.8	26.1	21.7	13.0	4.3	0.0
	50대	41.9	22.6	19.4	6.5	6.5	3.2
	60세 이상	28.9	15.8	28.9	21.1	2.6	2.6
가구 소득	저소득	50.0	9.1	18.2	13.6	4.5	4.5
	중소득	36.8	21.1	18.4	18.4	2.6	2.6
	고소득	19.5	34.1	26.8	7.3	9.8	2.4

따라서,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이든 ‘개인형 퇴직연금’이든 간에 가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외 추가적인 가입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추가적 가입유인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 정책으로 제기되었던 ‘공사연계연금’²³⁾과 같이 보조금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제 혜택이 많고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²⁴⁾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23) 강성호·류건식(2016).

24) 여기에서는 편의상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저렴한 운용수수료를 동일 범주로 보고 설문조사하였으나 지원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설문이 요구됨.

〈표 Ⅲ-2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활성화 방안

(단위: %)

구분		세제혜택 많이 부여, 운용수수료 저렴	안정적인 수익 보장	가입 편리성	일부 중도인출 및 해지 용이	체계적인 투자 교육	개인형 퇴직연금 설명 및 홍보강화
전체		44.3	40.5	7.6	5.1	1.3	1.3
연령	20대	25.0	50.0	25.0	0.0	0.0	0.0
	30대	50.0	41.7	8.3	0.0	0.0	0.0
	40대	44.7	44.7	5.3	5.3	0.0	0.0
	50대	43.6	45.5	7.3	1.8	0.0	1.8
	60세 이상	44.9	30.6	8.2	10.2	4.1	2.0
가구 소득	저소득	37.9	27.6	24.1	3.4	3.4	3.4
	중소득	46.6	41.1	5.5	5.5	1.4	0.0
	고소득	44.6	46.4	1.8	5.4	0.0	1.8

4. 시사점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실태, 연금제도 가입 및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유형 및 경제상황 측면이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즉 사업형 자영업자보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훨씬 높은 반면, 평균 연간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자에 대한 향후 소득보장체계는 사업형 자영업자보다 소득수준 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근로자보다 경제력이 양호한 사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재무적 지원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충분성이 확보될수록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근로활동 지속을 통해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령과 업종을 동시에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관리가 필요하다. 즉,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더라도 임금근로 경험에 있는 경우가 상당(74.7%)하여 전 생애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특정시점에서의 자영업자 관리에 초점을 두다가 보다는 연령과 업종을 동시에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생계형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78% 수준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가입률은 21% 수준에 그쳐 사무종사자 및 사업형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공사적연금의 가입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이다. 따라서 생계형 자영업자의 공사적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개인연금의 납부액이 크며, 기존 개인연금의 만족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가입환경조성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맞춤형(특화형) 개인연금 도입 시 가입의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의향 또한 낮게 나타나 신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보조금지원 등과 같은 재무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예: 디폴트 옵션제도 등)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일부 설문문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문할 수 없었으며, 특히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설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IV. 해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운용특징

제 4장에서는 미·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공사적연금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총체적으로 개관(제1절)한 후, 그 속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 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제2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자영업자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부분적으로 사적소득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 제1절에서는 미·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공사적연금체계)를, 그리고 제2절에서는 사적소득보장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적연금 운용의 특징을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²⁵⁾

25)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 칠레(27.0%) 다음 순임.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금체계가 상이하여 제도 적용 시 한계가 존재함.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와 연금체계가 가장 유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타 국가보다 잘 구축되어 있어 검토 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국가를 선정함.

1. 소득보장체계²⁶⁾

가. 미국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과 퇴직 후 추가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업에서 제공하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를 보유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0층의 보충형 소득보장제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가 있으며, 1층에는 근로자 및 일정소득 이상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²⁷⁾으로 한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주정부 공무원연금, 철도공무원연금제도 등이 있다.

조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OASDI 제도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납부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이 부여되며, 최소 40 Credit²⁸⁾ 적립 등 일정요건 충족 시 해당 사유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²⁹⁾

26)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대상 연금체계 분류는 〈부록 1〉을 참조.

27) 1984년 이전 고용된 민간연방직원, 철도노동자, 연간 순소득이 \$400 미만인 자영업자 등은 OASDI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28) 2016년 기준 분기당 \$1,260에 해당하는 보험료(Quarter of Coverage)를 납부 시 1 Credit을 얻으며, 연간 최대 4 Credit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함.

29) 노령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62세에 도달해야 하며, 1950년 이전 출생자는 65세부터, 1950~1960년 출생자는 66세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완전급여수령이 가능함.

〈표 IV-1〉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 비교(2016년 기준)

구분	OASDI	H(메디케어)	사회보장세율
근로자(+고용주)	6.2%(+6.2%)	1.45%(+1.45%)	7.65%(+7.65%)
자영업자	12.4%	2.9%	15.3%
최대 과세한도액	\$118,500	무제한	-

주: 연간순소득이 \$400 미만인 자영업자에게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음.

자료: 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6년 기준으로 OASDI 보험요율은 12.4%이며 연소득 \$118,500를 상한으로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소득의 6.2%를 각각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의 12.4%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951년부터 OASDI제도에 편입된 자영업자는 제도도입초기 근로자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부담하였으나 1984년 이후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요율을 부담하고 있다.³⁰⁾

2층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 고용주지원 연금제도(Employer Sponsored Retirement Plans)와 정부보조연금제도(Government Pension Plans),³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Keogh Plan³²⁾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운영형태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부(DB: Defined Benefits)형 퇴직연금,³³⁾ 고용주의 기여금액을 사전에 확정된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으로 구

30)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OASDI 보험요율 변화 추이는 〈부록 2〉를 참조.

31) 연방 및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로, 퇴역군인연금, 퇴임판사연금, 철도노동자퇴직연금 등을 포함.

32) H.R.10 Plan, Self-Employed Pension 등으로도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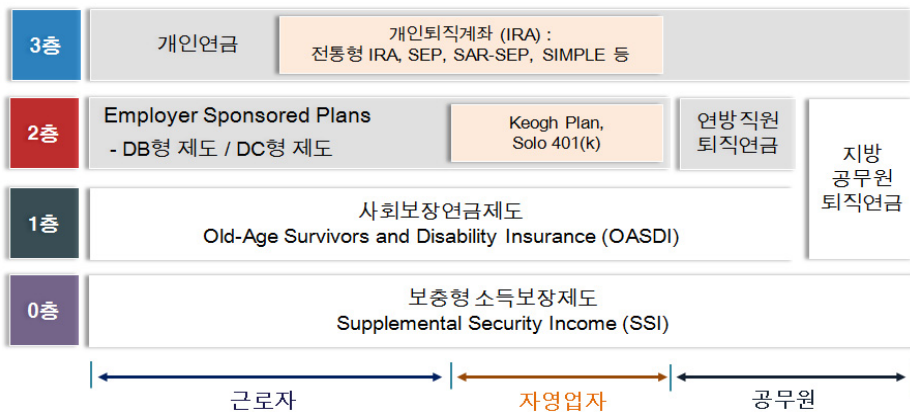
33)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액 산정방식에 따라 정액급여(Flat-Benefit Formulas), 평균급여(Career-Average Formulas), 최종급여(Final-Pay Formulas)로 구분함. 정액급여방식은 매 근무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평균급여방식은 근무기간 동안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최종임금방식은 퇴직 전 5년간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함(EBRI). 한편, DB형을 기초로 DC형의 성격을 보완한 Cash Balance Plan도 DB형으로 분류됨.

분된다.

DC형제도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적용을 받는 401(k),³⁴⁾ 403(b), 457, 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개별 근로자 계정에 적립하는 Money Purchase Plan, 고용주가 기업성과에 따라 기여액을 조정할 수 있는 Profit Sharing Plan, 자사주를 구매한 후 이를 근로자 계정에 적립하는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ESOP) 등이 있다. 한편, 2001년에는 내국세법(IRC)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Solo 401(k)³⁵⁾제도가 도입되었다.³⁶⁾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3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금제도로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개인연금 등이 있다. IRA제도는 ERISA법에 의하여 1974년 도입된 제도로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노후소득원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IV-1〉 미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34) 제도명칭은 일반적으로 내국세법 조항번호로 부여됨. 예를 들어, 일반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401(k)제도는 IRC401(k)의 적용을 받음. 403(b)는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457은 주정부공무원, 면세법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35) Solo 401(k)제도는 One-participant 401(k) plan, Individual 401(k), uni-401(k) 등으로도 칭함.

36) 미국의 퇴직급여시장 규모는 〈부록 2〉를 참조.

IRA제도에는 전통형 IRA(Traditional IRA), Roth IRA,³⁷⁾ 고용주보조 IRA(Employer Sponsored IRA)제도 등이 있다. 고용주보조 IRA제도로는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SAR-SEP IRA(Salary Reductio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급여공제(Payroll Deduction) IRA 등이 있다. SEP, SAR-SEP, SIMPLE IRA 등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고용주(개인사업주, 소규모상공인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³⁸⁾

나. 일본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층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공적연금은 기초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의 배우자, 학생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동 제도하에서 가입자들은 개인의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을 충족할 경우 노후에 정액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³⁹⁾

37) 전통형 IRA는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있으나, 퇴직 후 수령액에 대해서는 과세함. 반면, Roth IRA는 납입액에 대해 과세하나,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함.

38) 미국의 IRA시장 형태별 가입률 및 규모는 <부록 2>를 참조.

39) 국민연금은 2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시 65세부터 연금 수급자격이 부여됨. 60세부터 연금수령도 가능하나 이 경우 감액이 이루어짐.

〈표 IV-2〉 일본의 공적연금 가입대상 분류

구분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대상	• 20세 이상 60세미만 자영업자 • 농업종사자, 무직자 등	• 민간피용자 • 공무원 등	• 민간피용자와 공무원의 배우자
보험료	• 정액보험료 - 2015년 4월: 월 ¥15,590 (2005년 4월 이후 매년 ¥280 인상) - 2017년 이후: ¥16,900 고정 (2004년 가격기준) ※ 보험료 인상폭은 물가, 임금수준에 따라 변동	• 소득비례보험료(후생연금) - 2014년 9월 기준: 17.474% - 2004년 10월 이후 매년 0.354% 인상 - 2017년 이후 18.3%로 고정 • 기업·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피보험자 본인부담 없음 - 후생연금 또는 공제연금 등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피용자 연금제도에서 부담

자료: 厚生労働省(2016), 厚生労働白書(平成27年版).

민간기업의 근로자나 공무원(제2호 피보험자)은 1층의 국민연금 외에 2층의 후생연금보험⁴⁰⁾에 가입하여 기초연금과 함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⁴¹⁾ 후생연금보험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주로 급여소득이 있는 70세 미만 5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을 통해 퇴직연금⁴²⁾과 국민연금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⁴³⁾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공적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제도로는 개인형 확정기여(DC)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에만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소득비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와의 노후소득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1969년에 도입된

40) 후생연금보험은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입자 소득에 대해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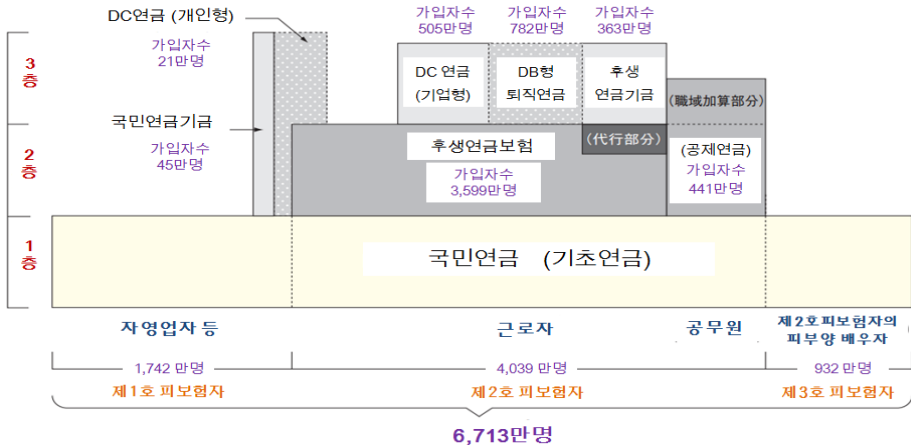
41) 2015년 10월 이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비례부분과 퇴직수당을 보장하는 공제연금제도가 존재하였으나, 동 제도는 2015년 10월에 후생연금제도로 일원화됨.

42) 일본은 2001년 퇴직연금 관련 법 개혁을 통해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으로 유지돼 오던 기존 퇴직연금 체계를 확정급여형(新DB형)과 확정기여형(新DC형) 중심 체계로 전환. 적격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외적립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하며, 2002년 4월 新DB형의 실시로 2012년 폐지됨.

43) 후생노동성(2016)에 따르면 2014년(平成26年) 3월 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자 수는 3,95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총액은 52조 8,436억 엔임.

제도로, 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입 이후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IV-2〉 일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주: 1) 가입자 수는 2015년(平成27年) 3월 말 기준임.

2)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을 폐지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또한 후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함. 다만, 2015년 10월 이전 공제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분은, 이후에도 가입 기간에 따라 직역가산 부분을 지급함.

자료: 厚生労働省(2016); 厚生労働省(2015).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적연금에 가입한 20~59세 자영업자의 수는 315만 명으로 대상자의 98.1%가 가입을 하고 있으며,⁴⁴⁾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비중은 83.7%에 이르고 있다.⁴⁵⁾

44) 일본의 근로형태별 공적연금 가입자 수는 〈부록 3〉을 참조.

45) 2015년 기준, 자영업자가 공적연금에 40년 가입할 경우 월 ₩65,008(1인 기준)을 수령할 수 있음. 한편, 평균임금 근로자부부가 40년 가입할 경우 제2호 피보험자 후생연금과 기초연금(부부 2인)을 합산하여 월 ₩221,507을 수령할 수 있음.

다. 독일

독일은 1889년 장애 및 고령보험법(Gesetz, betreffend die Invaliditäts und Altersversicherung) 제정을 통해 1891년부터 세계 최초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⁴⁶⁾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저소득노인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0층), 법정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0층에 위치한 기초소득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는 개인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1년 연금개혁에 따른 법정연금액 삭감으로 우려되는 노인빈곤 악화 방지, 자산조사에 따른 개인적 수치심으로 빈곤을 은폐하는 문제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⁴⁷⁾

1층의 법정연금제도(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는 근로자, 농민,⁴⁸⁾ 수공업자⁴⁹⁾ 및 예술가 등 일부 자영업자,⁵⁰⁾ 광산노동자, 공무원 등과 같이 특정 산업이나

46) 1911년에는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보험법(Versicherungsgesetz für Angestellte)을 제정함으로써 특정소득 이하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함. 이후 1968년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의 소득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가입이 제외되어왔던 고소득자도 제도에 당연가입자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으로 편입됨.

47) 석재은 외(2004) 등을 참조.

48)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1957년 10월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의 발효로 도입됨. 제도 도입 초기 농업부문에만 한정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었으나, 법률개정을 통해 임업, 과수원업, 원예업, 양봉업, 내수면 어업, 양식업 등도 포함됨. 1995년 이후부터 자영농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 농민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보험료에 대한 차등보조금이 지원됨.

49) 1938년 수공업자 노후소득보장법이 제정되어, 자영업자 중 일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으로 편입됨. 동 제도는 제도도입 초기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서 관리해 왔으나, 1962년부터는 노동자연금제도로 관리운영주체가 이관됨.

50) 1981년 예술가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자유예술인(미술인과 음악인 등)과 작가들도 공적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자로 분류되어 사무직 근로자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사회보험료의 5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저작권 사용자와 정부가 사회보험부담금

직종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⁵¹⁾ 특히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영업자 중에서도 조산사, 해상안내원, 예술가와 언론·출판인, 가내수공업자, 어업종사자, 상공인, 창업지원금수령자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당연가입자로 지정하여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⁵²⁾

당연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법정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의사, 변호사, 약사 등 특수직종 자유직업 종사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직종별로 특수직종 자영업자 공제조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연금제도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법정연금의 보험요율은 2016년 현재 18.7%이며,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⁵³⁾

노후소득보장체계상 2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자발적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 노령부양법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⁵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직접급여보장과 간접급여보장으로 구분된다.⁵⁵⁾

(Sozialabgabe)과 보조금(Bundeszuschuss) 명목으로 각각 30%와 20%를 부담함(보건사회연구원 2012).

51) 2005년 국민연금 조직체계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 노동자연금제도, 광산종사자연금제도가 단일 국민연금제도로 통합됨. 즉, 종래의 노동자연금제도와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는 단일의 일반연금보험으로 통합되고, 광산종사자연금제도는 광업연금보험으로 전환됨.

52) 사회법전 제6권 노후연금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공적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으로서의 자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김영미 2014’ 등을 참조).

(1)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교사, 강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자, (2) 자영업자로서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간병 및 간호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자, (3) 조산사 및 산부인과 간호사, (4) 해상안내원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해상안내원, (5) 예술가사회보험법에 따른 예술가와 언론인, (6) 가내수공업자, (7) 연안운행선박의 선주와 연안어업종사로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8) 상공인 등록부에 등재된 상공인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 (9)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10) 통상적이고 본질적으로 1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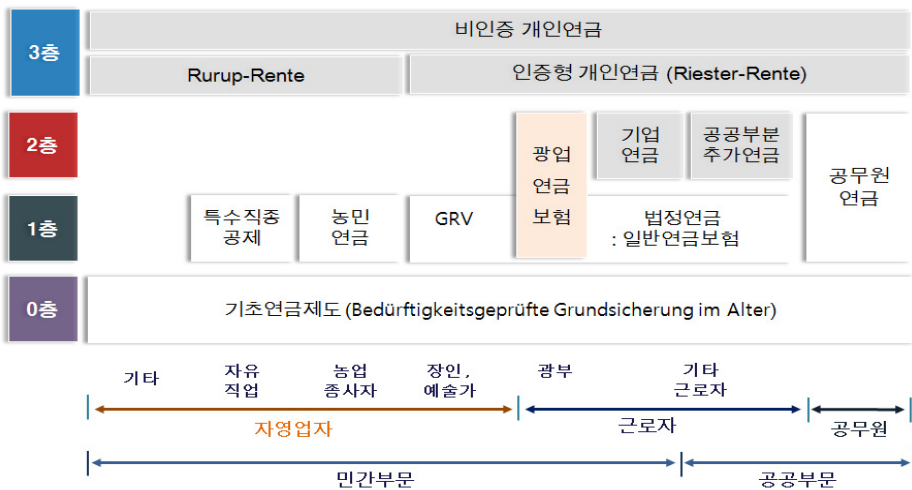
53)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54) 독일의 퇴직연금제도 형태는 〈부록 4〉를 참조.

55) 직접적인 급여보장의 형태는 직접보장(Direktzusage)이며, 동 법 제1b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간접적인 급여보장은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연금금고(Pensionskasse),

노후소득보장체계상 3층은 자발적인 개인연금제도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Rente)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뤼롭연금(Rürup-Rente)이 이에 해당한다. 리스터연금의 경우 법정연금 가입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의무가 부여된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타 자영업자도 가입신청을 할 경우(자영업 개시 5년 이내)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림 IV-3〉 독일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주: 자유직업 자영업자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컨설턴트 등이 포함됨.

자료: Jay et al. (2007), Schmähl (2004) 등을 수정하여 작성함.

독일은 법정연금의 보장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자의 노후 소득원 중 퇴직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⁵⁶⁾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인구고령화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정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보조금지급 정책 등을 시행함에 따라 그 비중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 일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법정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이 된 반면, 특수직종에 속한 자영업자 등은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고(Unterstützungskasse), 연금펀드(Pensionsfonds)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56) 공적부문에서 운영되는 연금제도의 지출규모는 〈부록 4〉를 참조.

라. 영국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0층의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기초연금 성격을 지닌 1층의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소득연계 성격을 가진 2층의 부가연금(addition pension)⁵⁷⁾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크레딧제도는 1997년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를 개편한 것으로, 보장부문과 저축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⁸⁾ 1층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⁵⁹⁾ 16세 이상인 자로서 2015~2016년 기준으로 주당 £153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연간소득 £5,885 이상인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1978년 노동당의 제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이후 S2P(State Second Pension)로 변경되게 되었다. 2층의 공적연금은 적용제외(Contracting out)를 통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사적연금제도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NEST, Stakeholder Pensions,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과 같은 개인연금이 있다. 먼저, Stakeholder Pensions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1년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연금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인형 DC제도로 기존 개인연금의 문제점(복잡하고 어려운 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 수수료의 한도를 낮게 제한(연간 1.5%)하고 낮은 금액 수준의 기여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⁶⁰⁾

57) <https://www.gov.uk/additional-state-pension>.

58) 보장크레딧은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저축크레딧은 기초연금 외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추가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됨.

59)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

60) 근로자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가 납입한 1파운드 당 0.28파운드를 개인퇴직계좌에 지원하는 형태의 세제혜택도 부여함. 그러나 고비용 판매구조, 높은 관리비용, 높은 중도해지율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

NEST제도는 DC형 개인연금계좌제도로 사적연금의 근로자 참여 감소로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개인투자형개인연금(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은 운용에 있어 가입자의 재량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보석, 골동품 등 희귀 상품을 제외한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⁶¹⁾ 이들 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 사적연금운용

가. 가입단계

1) 가입대상 및 방식

가) 가입대상

해외 주요국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형 사적 연금을 제공하기 보다는 자국 내에 운영 중인 사적연금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영업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통형 IRA, 일본의 개인형 DC제도, 영국의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Corporation(NEST), Stakeholder Pension(SHP),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SIPP), Personal Accounts(PA) 등에서는 사적연금 가입대상에 자영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특화된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로는 미국의 Solo 401(k)⁶²⁾제도와 Keogh Plan,⁶³⁾ 독일의 Rürup-Rente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SIPP제도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세제혜택을 원하는 부유층들이 구매하는 상품으로 국한됨(이인호·신관호 2012).

62) “Solo-401(k)”제도는 “one-participant 401(k) plan”, “Self-Employed 401k”, “Personal 401k”, “individual 401(k)”, “uni-401(k)”, “Uni-k”, “Single k” 등의 용어로도 사용됨.

63) Keogh Plan이란 용어는 1962년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Eugene James Keogh 의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Self-Employed Retirement Plans”, “Qualified Plan”, “H.R.10 plans” 등의 용어로도 사용됨.

①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

미국에서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ndividual 401(k) Plan,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Plan, Keogh Plan이 있으며, 이 중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으로는 Solo 401(k), Keogh Plan 등을 들 수 있다.

Keogh Plan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고안된 과세 이연형 개인연금상품(tax-deferred retirement plans)으로, 1962년 Self Employed Individual Tax Retirement Act에 의해 도입되었다.⁶⁴⁾

동 제도 도입 이전 대다수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세제적격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었으며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또한 세제적격연금제도에 가입이 불가능하였다. Keogh Plan은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퇴직 후 수급시점에는 일반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 제도의 가입대상으로는 자영업 수입이 있는 근로자 또는 파트너로서, Schedule C로 과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Schedule E로 과세신고를 하는 개인이나 동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Keogh Plan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확정기여형⁶⁵⁾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1년 Internal Revenue Code(Section 401)의 수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Solo 401(k)를 도입하였다. Solo 401(k)는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로써 Keogh Plan과 도입 목적이 같지만, 가입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개인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도 도입초기 보험료 납입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어 다른 제도에 비해 장점을 있었으나 현재 다른 연금 제도들과 기여상한액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Solo

64) 고평수 외(2006) 등을 참조.

65) 확정기여형은 Money-purchase plan과 Profit-sharing plan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가입이 가능함. Money-purchase plan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비율로 의무적인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짐. 반면, Profit-sharing plan은 보험료 납입이 이익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매년 변경이 가능함.

401(k)의 특징으로는 높은 제도 유연성, 대출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Solo 401(k)는 이윤분배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기여금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자영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익이 작을 때는 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도 있으며, 미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IV-3〉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제도 비교(2016년 기준)

구분	SEP IRA	Solo 401(k)	Simple IRA	Traditional IRA	Keogh Plan
가입대상	개인기업, 주식회사, 합명회사, 비영리기업, 정부단체 등	자영업자	종업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 개인기업, 합명회사 등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배우자 등 (연령제한: 70.5세)	자영업자, (비법인기업 포함)
도입시기	1978	2001	1996	1974	1963
관련 법안	Revenue Act of 1978	Internal Revenue Code 2001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1996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	Self-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 1962
보험료 납입주체	고용주	개인	근로자, 고용주	개인	개인
세제혜택	소득공제 (self-employment tax)	소득공제 (self-employment tax)	소득공제 (self-employment tax)	소득공제	과세이연
납입한도	\$53,000 (순매출액 25%)	\$53,000	\$12,500 (매출액 100%)	\$5,500	\$18,000
추가납입	불가	\$6,000	\$3,000	\$1,000	\$6,000
대출 가능여부	불가	허용 (최대 \$50,000: 계좌잔액의 50%)	불가	불가	불가
중도인출	허용: 59.5세 이전 인출 시, 소득세 + 10% 가산세(penalty)				

주: 추가납입액(catch up contribution): 중장년층의 은퇴자산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 EGTRRA(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50세 이상에 대해 추가기여제도(catch-up policy)를 도입함.

자료: LP(2016); <http://www.bcmadvisors.com/> 등을 참조.

이에 반해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리스터연금과 뤼롭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2년에 도입된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저소득 임금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제도로 법정연금 가입자가 개인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형태이다.⁶⁶⁾ 이에 따라 수공업자 및 예술가 등 법정연금의 당연가입자로 지정되어 동 제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리스터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의 대다수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 자영업자 대상 개인연금인 뤼롭연금(Rürup-Rente)을 도입하였다.

〈표 IV-4〉 독일 뤼롭연금 시장규모 및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유로, %)

연도	신계약			보유계약			
	계약건수	보험료		계약건수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정기납	일시납				
2005	153	221	45	148	-	220	-
2006	174	359	127	296	100.1	542	146.8
2007	318	730	348	608	105.6	1,256	131.5
2008	284	685	401	863	41.9	1,763	40.4
2009	234	542	397	1,080	25.5	2,122	20.4
2010	218	517	446	1,277	18.3	2,417	13.9
2011	211	548	474	1,490	16.6	2,764	14.4
2012	178	471	462	1,655	11.1	2,975	7.6
2013	119	368	524	1,763	6.5	3,075	3.3
2014	112	364	556	1,883	6.8	3,217	4.6
2015	98	337	643	1,973	4.8	3,340	3.8

자료: <http://www.gdv.de/>.

뤼롭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이지만, 주된 대상은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이다. 동 제도는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66) 리스터연금 가입 시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 등 재정보조금과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

하지만, 법정연금을 모델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제적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후에 매월 종신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⁶⁷⁾ 수급권은 법률상 상속되거나, 양도 및 대여가 금지되고 있다. 즉, 위류연금은 중도해지 가능성과 상속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과의 연계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위류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연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보험이나 펀드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② 자영업자 임의가입형 사적연금

자국 내에 운영 중인 사적연금 가입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임의가입형 사적연금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적연금으로는 영국의 NEST, Stakeholder Pension(SHP), Personal Accounts(PA), 일본 개인형 DC제도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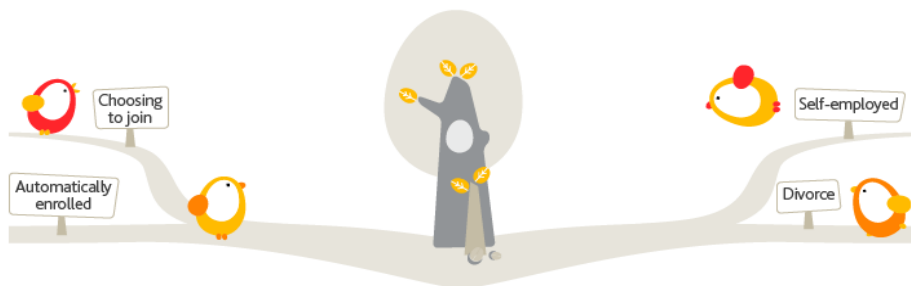
영국의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해 2012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이다.⁶⁸⁾ 동 제도하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연금 납입액의 20%를 정부에서 지원(근로자 5%, 사업자 3% 기여)하여 주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용주를 통해 NEST제도에 자동가입이 되나, 자영업자 등과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제도가입을 허용하고 있다.⁶⁹⁾ 즉, 자영업자(self-employed) 또는 타인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NEST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67) 2012년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수급개시 연령이 62세까지 증가함.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일시금 지급금지), 예외적으로 소액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월 수령액의 1%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68) NEST제도는 “Pension Act 2008”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동가입제도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퇴직연금기금임. 기초연금 외 개인연금계좌(Personal Account)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므로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함.

69) <http://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그림 IV-4〉 영국 NEST제도의 가입대상



자료: NEST(<https://www.nestpensions.org.uk/>).

또한 2001년에 도입된 Stakeholder Pension은 개인이 민간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제도로, 기업이 지원하는 퇴직연금형태(Employer Sponsored SHP)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형태(Individual SHP)가 존재한다. 가입대상으로는 중·저소득근로자, S2P(State Second Pension)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단기직 근로자, 이직이 잦은 산업의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⁷⁰⁾ 등이다.

영국에서 운영 중인 개인계좌(Personal Accounts)제도에서는 제도설계, 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를 국가에서 하지만, 투자 및 적립금관리, 연금급부지급 등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중간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22~65세, 여성의 경우 22~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연수입이 £5,000~£33,500인 근로자는 자동가입되며 가입 후 탈퇴가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대상연령 외 근로자들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2001년 개인형 DC연금(個人型確定拠出年金)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기초연금(1층), 후생연금보험(2층) 등의 공적연금에 추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3층) 중 하나이다. 동 제도의 운영주체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国民年金基金連合会)로,⁷¹⁾ 자영업자 등(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자영업자,

70) 원칙적으로는 확정급여형 연금가입자가 SHP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연소득이 £30,000 이하인 사람은 SHP에 연 £3,600까지 기여할 수 있음.

71) 確定拠出年金法(平成13年法律第88号) 平成13年10月1日; 한편, 기업형 DC연금의 운영주체는 기업형 연금규약의 승인을 받은 기업임.

자유직업, 학생 등) 또는 후생연금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의 직원(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⁷²⁾

〈그림 IV-5〉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액

자영업자 등	전업주부 등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자 및 공무원, 사학공제 가입자
★ 납입한도 年額81.6万円 (月額6.8万円) ※国民年金基金との合算枠 国民年金基金 ※個人形DCと重複加入可能	★ 납입한도 年額27.6万円 (月額2.3万円)	납입한도 年額27.6万円 (月額2.3万円)	★ 납입한도 年額24.0万円^{※2} (月額2.0万円) または 年額14.4万円^{※3} (月額1.2万円)
			퇴직연금 등
			후생연금보험 (2階)
			기초연금 (1階)

주: 1) 기업형 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企業年金) 가입자 중 기업형 DC에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 대상.

2) 퇴직연금(企業年金) 등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 “기업형 DC에만 가입하고 있는 자”를 제외(공무원·사학 공제 가입자도 포함).

자료: 厚生労働省(2016).

동 제도는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개인별계좌에 적립하여 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급부액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⁷³⁾ 2016년 6월 말 기준 개인형 DC연금의 총 가입자 수는 269,828명으로 이 중 제1호 가입자는 72,007명, 제2호 가입자는 197,821명이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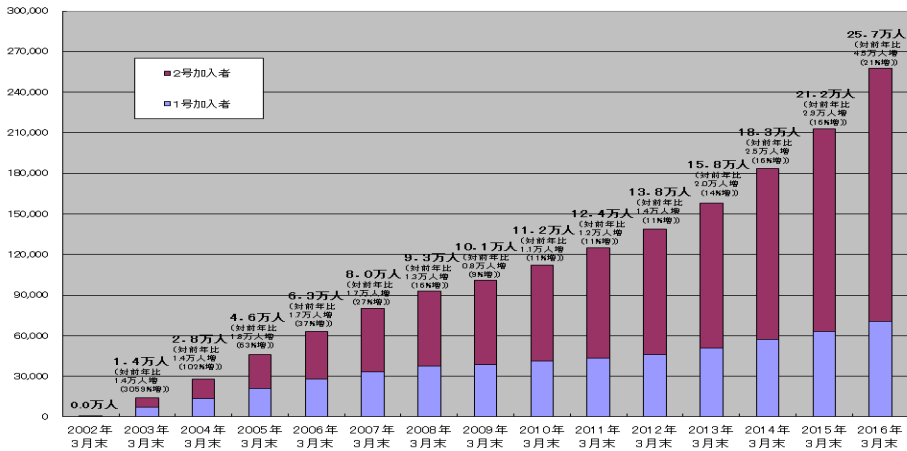
72) 개인형 DC 가입자는 자영업자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전업주부 등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함.

73)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kyoshutsu>.

74) 기업형 DC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6월 말 기준 약 5,789,000명에 달함.

〈그림 IV-6〉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厚生労働省(2016).

나) 가입방식

소비자는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타성과 안이한 사고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행태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연금가입 유도를 위해 가입대상자가 탈퇴의사(Opt-out)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lment)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사적연금 가입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동가입제도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5〉 참조).

다만, 칠레는 개인형 연금에 대해 2015년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의무시행하기 이전 2012년과 2014년 기간 동안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 탈퇴의사 절차를 거치는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였다.⁷⁵⁾ 또한, 최근 덴마크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제안하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⁷⁶⁾

75) Nina Paklina(2014); Heinz P. Rudolph(2016).

76) IPE(2016. 8. 31), "Danish government proposes mandatory pension savings".

〈표 IV-5〉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방식 비교

구분		자동가입 운영여부		자영업자 가입방식
		자영업자	근로자	
미국	Keogh Plan	×	—	임의가입
	Solo 401(k)	×	—	임의가입
	401(k)	—	○	—
캐나다	PRPP	×	○	임의가입
칠레	ICA	○	○	의무가입(자동가입)
일본	개인형 DC	×	×	임의가입
독일	Rürup	×	×	임의가입
영국	NEST	×	○	임의가입
	Stakeholder Pension	×	×	임의가입
	Personal Accounts	×	○	임의가입

주: 1) 칠레의 경우 2015년 자영업자의 의무가입 시행 이전, 2012~2014년 기간 동안 근로자의 가입탈퇴 의사가 부여된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함(Heinz 2015).

2) ICA: 확정기여형 개인투자계정(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s).

PRPP: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2)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가) 납입상한액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Keogh Plan은 제도도입 이후 보험료 납입 상한액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74년 이전에는 퇴직연금 납입액 상한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자영업자의 납입한도액은 연 \$2,500로 차별화 되었다.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법에서는 수입의 15%와 \$7,500중 작은 금액으로, 1981년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에서는 수입의 15%와 \$15,00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1982년 조세형평 및 재정책임법(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사업장 간 차별이 철폐되어 Keogh Plan의 납입한도액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한도액은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현재 제도유형별로는 Money Purchase Plan의 납입상한액은 \$44,000와 자영업자 소득의 25% 중 작은 금액으로, Profit Sharing Plan⁷⁷⁾의 경우는 \$44,000를 최고로 하여 새로

은 영업 수입의 0~20%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Solo 401(k)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은 \$50,000이며 50세 이상 추가 납입액(catch up contribution)은 \$5,500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IRA의 연간 납입한도가 \$5,000로 설정된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⁷⁸⁾

다음으로 일본 개인형 DC제도⁷⁹⁾의 납입한도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월 ₩55,000(연간 ₩660,000)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8,000(연간 ₩816,000)까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⁸⁰⁾ 연간 납입한도는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81.6만 엔, 근로자의 경우 27.6만 엔으로 자영업자의 납입한도가 근로자에 비해 약 3배 가량 더 높다.

부담금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우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외에도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영업자는 기초연금밖에 가입할 수 없어 사적연금의 부담금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⁸¹⁾ 근로자의 부담금 상한액은 급여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1년 월 ₩15,000에서 2010년 ₩23,000으로 인상되었으나, 자영업자의 부담금 상한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부담금 납입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부담금을 대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등은 직접 납입한다. 이때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⁸²⁾

77)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는 기업이 매년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적립하여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함.

78)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납입 가능한 기여액(additional "catch up" contribution)이 \$1,000로 설정되어 있음.

79) 일본 기업형 DC는 사업주가 기여금을 부담하고, 개인형 DC는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입하는 형태임.

80) 확정각출연금법 제67·68조; 보험료 납입방식은 자영업자는 직접,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이 종업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연합회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한편, 기업형 DC연금의 경우 후생연금기금 등의 확정급여형 연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월 납입 상한액은 55,000엔으로, 후생연금기금 등의 확정급여형연금을 보유한 월납입상한액은 27,500엔임.

81) Whitehouse(2005)는 퇴직연금세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자별, 연령별, 소득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82) 확정각출연금법 제70·71조 관련.

〈표 IV-6〉 일본 개인형 연금제도의 납입 한도액(월기준)

(단위: 엔)

구분		2001.10	2004.10	2010.1	2014.10 ~ 2016
기업형	타 퇴직연금 보유자	18,000	23,000	25,000	27,500 (연: 33만)
	타 퇴직연금 미보유자	36,000	46,000	51,000	55,000 (연: 66만)
개인형	제1호 가입자(자영업자)	68,000	68,000	68,000	68,000 (연: 81.6만)
	제2호 가입자(근로자)	15,000	18,000	23,000	23,000 (연: 27.6만)

주: 제2호 가입자는 기업형연금과 확정급여형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임.

자료: Nomura Research Institute(2015); Pension Fund Association.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뮌헨연금의 경우 독신인 자영업자는 EUR 20,000 한도 내에서, 기혼인 자영업자는 EUR 40,000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반면 영국의 NEST에서는 £4,90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7〉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 최대 납입한도액 비교(2016년 기준)

구분		자영업자	근로자
미국	SEP	\$53,000	—
	SIMPLE IRA	\$12,500	—
	Keogh Plan	\$53,000	가입 불가
	Solo 401(k)	\$53,000	가입 불가
	Traditional IRA	\$5,500	\$5,500
일본	개인형 DC	¥816,000	¥276,000
독일	Rürup	독신자: EUR 20,000 기혼자: EUR 40,000	가입 불가
영국	NEST	£4,900	좌동
	Self-Invested Personal	£40,000	좌동

나) 세제혜택

미국의 사적연금은 대부분 “EET” 방식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즉,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Exempt),⁸³⁾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

소득, 자본소득 등은 비과세(Exempt), 급부단계에서 과세(Taxed)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Roth IRA는 “TEE” 방식의 세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Roth IRA는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으나(Taxed), 적립금 운용단계와 수령단계에서는 비과세(Exempt)한다. 따라서 현재 세율이 낮거나 은퇴시 IRA외에 다른 소득 등으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에게 유리하다.⁸⁴⁾

“EET” 방식은 퇴직소득세 납부시점을 적립금 수령시점으로 연기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적립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은퇴 후의 적립금 수령시점에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시니어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진다.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인 Solo 401(k), Keogh Plan은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납입한도를 볼 때 각각 53,000달러, 18,000달러로 다른 IRA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8>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단위: 엔)

구분	SEP IRA	SOLO 401(K)	SIMPLE IRA	Traditional IRA	Roth IRA	Keogh Plan
납입한도 (+추가납입)	53,000 (불가)	53,000 (+ 6,000)	12,500 (+ 3,000)	5,500 (+ 1,000)	5,500 (+ 1,000)	18,000 (+ 6,000)
보험료 납입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과세 non-deductible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적립금 운용 (투자수익)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급여수령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Tax-Free)	과세
과세형태	EET	EET	EET	EET	TEE	EET

주: 1) Catch-up contribution: 50세 이상부터 가능.

2) Roth IRA: 가입요건에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제한 존재(독신자: \$132,000, 부부: \$194,000),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인출시점 59.5세 이상인 경우 인출 시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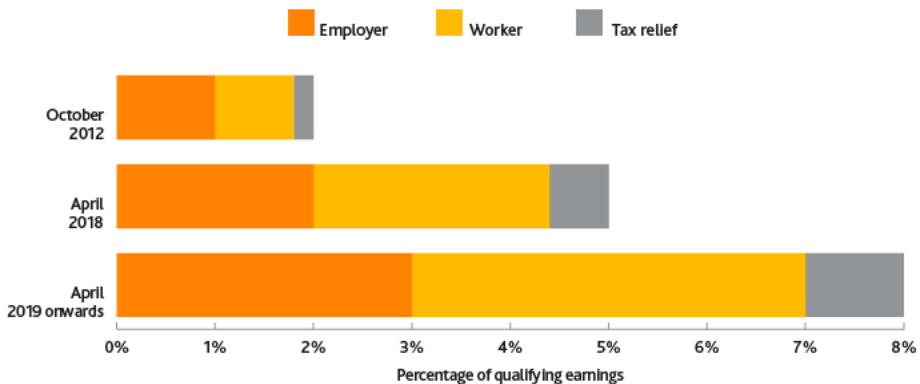
3) Traditional IRA: 가입요건에 소득제한은 없으나, 연령제한 존재(70.5세).

83) Traditional IRA제도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납입한도액과 과세대상 소득(taxable compensation) 중 작은 금액임(IRA Deduction Limits 참조).

84) 김영란(2011) 참조.

적격노후보장상품(Qualified Retirement Plans)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연금지급 단계에서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급여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대상 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⁸⁵⁾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연금급여의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⁸⁶⁾ 연금 등 정기적인 지급방식의 경우 연금급여에서 과세제외비율⁸⁷⁾을 이용하여 계산한 원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대상 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일시금 등 비정기적 지급방식(non-periodic Payments)의 경우 가입자가 10년 연분연승법(10 year tax option)이나 20% 자본소득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⁸⁸⁾

〈그림 IV-7〉 영국 NEST제도의 보험요율 및 세제지원



자료: NEST(2016).

85) 미국의 소득구간별 세율(tax brackets)은 단독신고(Single filers), 부부합산신고·적격미망인(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widower),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신고(Head of household) 등 신고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임. 소득구간별 세율은 〈부록 2〉를 참조.

86) IRS(2016), IRS Publication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87) 과세 제외비율 산출방법에는 일반법과 간편법(simplified method)이 있음.

88) 10년 기준 연분연승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되어 과세됨. 동 방식은 과세소득을 10으로 나누고 특정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 다시 1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임. 자본소득과세는 1974년 전에 가입한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일시금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과세소득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함(홍법교 외 2013; IRS 등 참조).

영국의 사적연금 과세체계는 “EET” 방식으로 기여금과 적립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연금지급 단계에서는 과세한다. 퇴직금 수령 시 25%의 일시금 인출은 비과세로 가능하며,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특히, 영국 NEST제도는 보험료납입 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최소기여금은 2012년에는 2%, 2016년에 5%, 2017년에 8%로 단계별로 상향조정되며, 이 가운데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은 역시 각각 1%, 2%, 3%로 증가한다. 결국, 2017년에는 최소기여금 8%(기여금 상한은 3,600파운드) 가운데 사용자 3%, 근로자 4% 및 개인계좌로 환급(tax credit)을 통해 정부가 1%를 보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뤼롭연금(Rürup-Rente)에 대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을 안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⁸⁹⁾ 납입된 보험료는 2005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지원의 상한은 미혼자는 2만 유로, 기혼자의 경우 4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다. 뤼롭연금에 의한 연금급여는 법정연금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를 부담하며, 보험료 납입액 대비 세제혜택률은 2040년까지 5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표 IV-9〉 뤼롭연금의 기여액 대비 세제혜택

(단위: %)

구분	2005	...	2013	...	2020	...	2040
보험료납입(소득공제)	60	...	76	...	90	...	100
연금수령(과세이연)	50	...	60	...	80	...	100

자료: Better Finance(2015); Bundesfinanzministerium.

또한, 법정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보조금과 더불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⁹⁰⁾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입자 본

89) Better Finance(2015).

90)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혜택은 없고, 소득공제혜택이 존재함(연금 수령 시 과세). 반면, 저소득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있으나, 소득공제혜택은 없음(연금 수령 시 소득수준(공적연금포함)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혜택 부여).

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02년 도입 당시 본인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은 각각 38유로와 46유로였으나,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현재에는 154유로와 185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증액되어 현재 2,100유로에 달하고 있다.

〈표 IV-10〉 리스터연금의 세제혜택

(단위: %, 유로)

연도	최대기여율 (연 소득기준)	보조금		소득공제액
		기본보조금 (본인)	자녀보조금 (자녀 1인당)	
2002	1	38	46	525
2005/2005	2	76	92	1,050
2006	3	114	138	1,575
2008년 이후	4	154	300	2,100

주: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300유로의 보조금 지원.

자료: Axel Börsch-Supan(2015).

일본 개인형 DC제도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금은 소득공제(소규모기업공제부담금 공제)대상이 되어 근로자(연간 276,000엔 한도) 및 자영업자(연간 816,000엔)별로 부담금 법정 납입한도의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표 IV-11〉 일본 개인형 DC제도의 세제혜택

구분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기업형 확정기여연금
보험료 납입	비과세 (가입자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	비과세 • 사업주 기여금: 전액 손금산입 • 가입자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
적립금 운용	특별 법인세 과세	
급여수령	• 연금수급 시: 공적연금 등 공제(표준연금액까지는 비과세)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 공제	

주: 1)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운용이익에 대해서 과세(원천분리과세: 20.315%)되나, 개인형 DC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임.

2) 적립금에 대해서는 별도 1.173%의 특별 법인세 부과.

자료: 厚生労働省(2016).

운용단계에서는 특별법인세 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타 연금과 동일), 급부단계에서는 다른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공적연금과 개인형연금의 연금소득에서 연금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한편, 자발적 의사로 가입이 가능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는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60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급, 연금수급자가 보험료 납입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6만 8천 엔 한도(소득세 4만 엔, 주민세 2만 8천 엔 한도)의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있다.⁹¹⁾

나. 연금 운용단계

영세자영업자 등 사적연금의 취약계층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올바른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연금자산운용으로 인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들은 연금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특정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디폴트펀드는 젊은 연령인 경우 고위험·고수익의 자산에 투자되고, 퇴직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우량증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도록 하는 라이프사이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금상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디폴트 옵션제도에 의한 운용수익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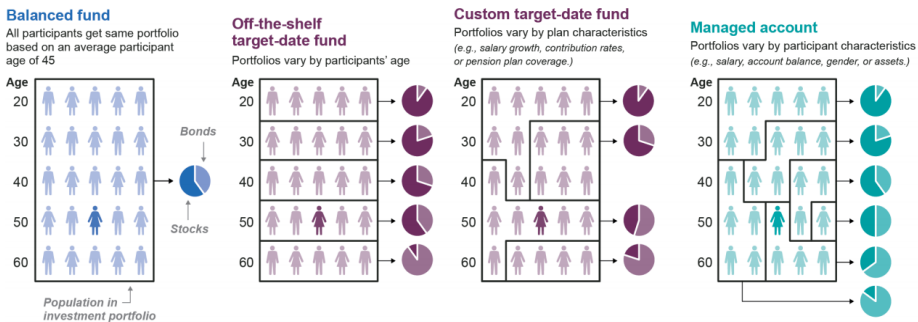
가) 제도도입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을 통해 자영업자 및 근로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적격디폴트 상품(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에 가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⁹²⁾ 2008년부터 DC형제도에 자동가입제

91) <http://www.nomuraholdings.com/jp/investor/shareholders/tax/data>.

도를 도입하여, 제도 가입 이후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설계된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적으로 기여금이 납입된다.⁹³⁾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디폴트 옵션에 기여금 납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로 탈퇴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그림 IV-8〉 미국의 디폴트 투자상품



자료: GAO(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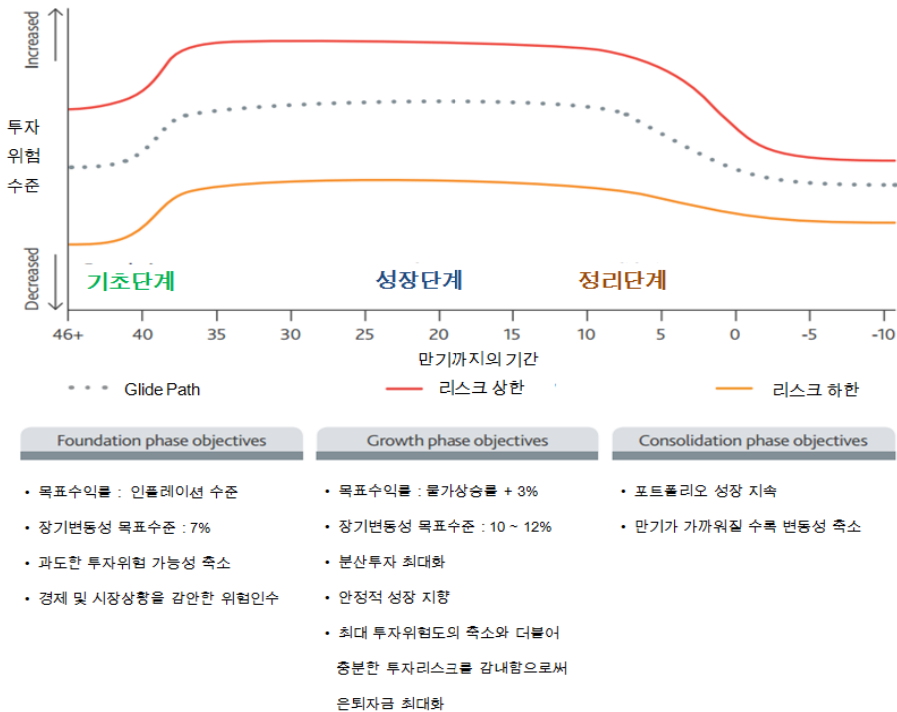
적격디폴트 상품에 포함되는 투자펀드로는 Balanced Fund, Target-date Fund, Managed Account 등이 있다. Balanced Fund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목표비중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며, Target-date Fund는 근로자의 연령과 은퇴시점을 고려해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투자상품이다. 한편 Managed Account는 근로자 개인별 나이와 은퇴시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일대일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92) <https://www.dol.gov/agenci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

93)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디폴트제도가 있었지만, 홍보부족 및 관련 법제도가 미비했고, 사업주가 정한 디폴트상품에 대한 투자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함으로써 디폴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 그러나 연금개혁법의 시행으로 미국정부는 기업이 노동부에서 정하는 적격디폴트상품에 속하는 투자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설정했을 경우, 투자손실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디폴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유인이 발생함. 즉, 자동가입된 디폴트옵션이 미국노동부에서 승인된 규제에 부합되는 상품이고 가입자에게 연금에서 나가거나 투자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했다면, 기업은 ERISA 404(c)에 의해서 투자손실에 대한 수탁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을 면책 받게 됨(남재우(2014) 등 참조).

반면 영국의 NEST제도, Stakeholder Pension에서는 가입자가 투자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 지정하는 디폴트펀드(default fund)인 Retirement Date Fund⁹⁴⁾로 운용이 된다.⁹⁵⁾

〈그림 IV-9〉 영국의 Retirement Date Fund 운영구조



주: Glide Path는 자산배분에 대한 비중 조절 계획을 의미함.

자료: NEST Corporation(2015), "Looking after members' money: NEST's investment approach".

예를 들어, NEST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2055년이 라면 가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입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NEST 2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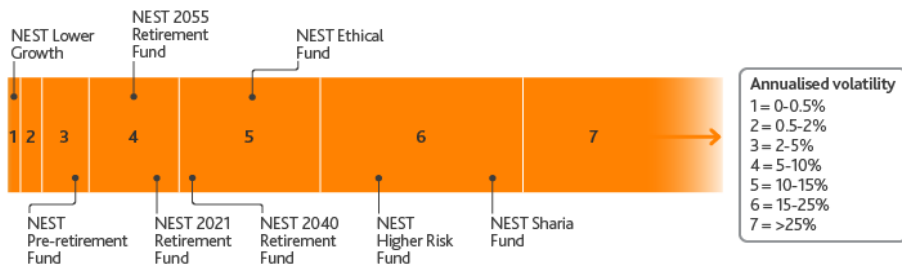
94) <https://www.nestpensions.org.uk>.

95) 90% 이상 가입자가 처음에 지정된 Default Fund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https://www.nestpensions.org.uk/schemeweb/NestWeb/public/whatisnest/contents/investment-approach.html>).

Retirement Fund” 등의 펀드에 자동적으로 투자된다.

적립금 운용은 기초단계(foundation phase), 성장단계(growth phase), 정리단계(consolidation phase) 등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단계에서는 5년 동안의 보수적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단계는 30년 이상의 기간으로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분산포트폴리오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단계에서는 은퇴 이후 10년까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자산으로 이동하여 운영된다.

〈그림 IV-10〉 영국 NEST제도의 디폴트펀드 유형



자료: <https://www.nestpensions.org.uk>.

NEST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Retirement Date Fund 외에도 개인의 고수익·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NEST Ethical fund, NEST Sharia fund, NEST Higher Risk fund, NEST Lower growth fund, NEST Pre-retirement fund 등을 운용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개인형 DC연금에서는 예금, 공사채 투자 신탁, 주식, 펀드, 보험 상품 등의 운용상품 중에서 가입자 본인이 선택하여 운용 지시한다. 또한, 운용 상품을 선정·제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3개 이상의 상품을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⁹⁶⁾

96)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kyoshutsu>.

〈표 IV-12〉 주요국의 디폴트펀드 운영현황 비교

구분		제도유형	투자펀드 수	법적의무
미국	401(k)	퇴직연금	17	있음
	IRAs	개인연금	180	없음
영국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개인연금	150	없음
	Stakeholder Pensions	퇴직연금	35	있음
	NEST	퇴직연금	—	있음
뉴질랜드	KiwiSaver	퇴직연금	5	있음
아일랜드	PRSA	퇴직연금	5	있음
캐나다	RRSP	개인연금	10~13	없음

주: SIPP는 Self-Invested Personal Plan,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의 약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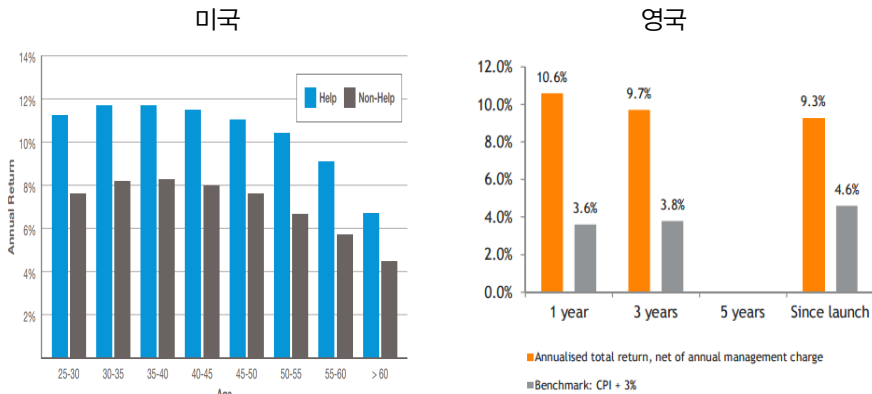
자료: Eduardo Rodriguez-Montemayor(2014), "Investment Choice in Defined-Contribution Pension Scheme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olicy Issues", INSEAD Working Paper.

나) 운용성과

전술한 바와 같이 디폴트 옵션제도는 금융지식의 부족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지시 능력이 없거나 자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가입자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방지하여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연금보호법 시행 전 디폴트 옵션으로 이용된 투자상품은 대부분 MMF와 안전형펀드(stable value fund) 등 원금보장형 자산으로 투자되었다. 대부분의 기여금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안정자산 위주로 집중해서 투자되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미국노동부는 연금보호법을 계기로 디폴트 옵션으로 적합한 투자전략을 열거식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영국의 NEST제도에서도 운용지식이 충분치 않은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 운영 중인 디폴트펀드(NEST 2040 Retirement Fund) 평균운용 수익률은 제도운용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물가상승률+3%)을 4%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Target-date fund나 Managed accounts를 활용한 경우가 본인이 직접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경우보다 운용수익률이 3%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1〉 미국과 영국의 디폴트펀드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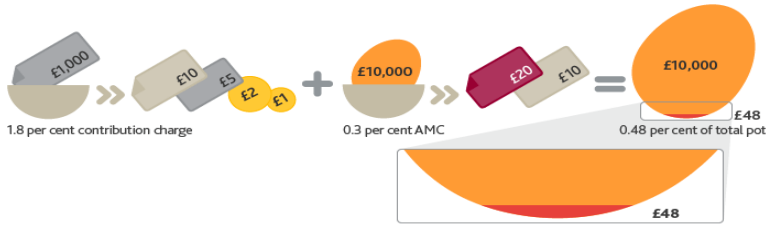


자료: AON(2014); NEST(2016)

2) 저렴한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영국 NEST제도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낮은 비용이다. NEST제도의 운영비용으로는 설립비용 충당을 위한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기여금에 1.8%의 수수료(contribution charge)를, 연간 운영수수료(AMC: Annual Management Charge) 명목으로 적립금에 대해 0.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 운영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약 0.48%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림 IV-13〉 참조). 이는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Stakeholder pension의 수수료인 적립금의 13%보다 더 낮은 비용구조이다.

〈그림 IV-12〉 영국 NEST제도의 운용수수료



자료: <https://www.nestpensions.org.uk/>.

반면 미국 401(k)제도의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나누어진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이나 적립금 운용의 기록관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에 자산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계좌의 설정, 급여의 지급 등에 대해 부과된다.

미국의 401(k)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필요한 서비스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수수료 비용 및 사용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⁹⁷⁾

일본의 개인형 DC연금의 관리비용은 크게 가입수수료와 업무관리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수수료는 가입 시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납입하는 가입자격 적격심사 비용이며, 가입자격 심사 시만 지급하므로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 업무관리수수료는 매월 납입되는 부담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업무관리수수료(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납입), 업무위탁수수료(위탁 금융회사에 납입), 운영관리수수료(운영관리기관에 납입)로 구성된다.

97) 수수료체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자 간 수수료체계 비교의 복잡성 증대를 유발하고 사업자 선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노동부에서는 수수료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이를 공시하여 규정하고 있음(The Department of Labor'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 401(k) Plan Fee Disclosure Form); 박여영(2010) 등을 참조.

다. 연금 지급단계

1) 급여지급방식

미국의 IRA 가입자는 59.5세가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통형 IRA의 경우 70.5세부터는 최소인출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여야 한다.⁹⁸⁾ 만약 인출액이 최소급여수준보다 작은 경우 부족액의 50%를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Roth IRA는 최소인출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어 70.5세 이후에도 자유의사에 의해 인출이 가능하다.

영국은 급여지급 단계에서 가입자가 축적된 자산을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상품 등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축적된 자산 중 25%에 대해서는 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인출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⁹⁹⁾

한편, 일본의 개인형 DC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등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70세 이전에는 급여수급이 이루어져야 한

98) 이는 IRA제도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 시 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가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분배받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항임.

99) 영국은 Finance Act 2012에 따라 2015년 4월 이전에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연금(Lifetime Annuity 또는 Income Drawdown)으로 수령해야 하는 퇴직연금적립금의 연금화 수령 의무가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25%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함. 그러나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조치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정책은 2015년 4월에 폐지되어, 나머지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

〈영국의 소득세율 현황(2014. 4. 6~2017. 4. 5)〉

과세소득 (Taxable Income)	~£11,000	£11,001~ £43,000	£43,001~ £150,000	£150,000~
세율구간(Band)	기본공제 (Personal Allowance)	기본세율 (Basic rate)	고세율 (Higher rate)	최고세율 (Additional rate)
소득세율(Tax Rate)	0%	20%	40%	45%

자료: <https://www.gov.uk/income-tax-rates>.

다. 다만, 급부개시연령 구간별로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차등 적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60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하나 연령별로 일정 가입기간¹⁰⁰⁾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IV-13〉 자영업자 사적연금 급여개시시점 및 지급방식 비교

구분		개시시점	지급방식
미국	Traditional IRAs	59.5세	연금 또는 일시금 (70.5세 최소인출(RMD) ¹⁾ 규정)
	Solo 401(k)		
	Keogh Plan		
일본	개인형 DC연금	60세	연금 또는 일시금 (70세까지 수급개시)
독일	Riester	62세	종신연금 또는 프로그램인출 (85세 전 연금전환, 30% 내 일시금수령)
	Rurup		종신연금
영국	NEST	55세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일시금 25% 비과세)
	Stakeholder Pensions		

주: 1)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자료: Hagen and Kleinlein(2012); Oxera(2013).

반면 독일에서는 급여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지급은 가입자가 62세가 된 시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리스터연금의 경우 30%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범위 이외의 급여액은 정기 종신연금이나 프로그램인출 형태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8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인 뤼플연금은 62세부터 급여수령이 가능하며, 종신연금 수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100) 60세: 10년, 61세: 8년, 62세: 6년, 63세: 4년, 64세: 2년, 65세: 1개월 이상.

2) 중도인출(대출포함)

미국의 자영업자대상 사적연금제도에서는 59.5세가 되기 이전, 중도인출(withdrawal)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초 주택구입, 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페널티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전통형 IRA의 경우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하는 경우는 연방소득세 납부와 10%의 조기인출 페널티(early withdrawal penalty)를 부여하고 있다.¹⁰¹⁾ Roth IRA의 경우 계정 설정이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적립금의 10% 페널티세가 부여된다.

〈표 IV-14〉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연금상품의 중도인출 및 대출 관련 규정

구분	SEP IRA	Solo 401(k)	Simple IRA	Traditional IRA	Keogh Plan
대출 가능여부	불가	허용 (최대 \$50,000 : 계좌잔액의 50%)	불가	불가	불가
중도인출	허용: 59.5세 이전 인출 시, 소득세 + 10% 가산세(penalty)				

미국의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Solo 401(k)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SEP IRA, Simple IRA, Keogh Plan 등과 달리 자영업자에게 주택구입, 교육비, 응급상황 등 발생 시 대출을 허용하여 자영업자의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²⁾ 즉, 상기사유¹⁰³⁾에 따라 계좌잔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0까지 차입이

101) 최초 주택구입, 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다음과 같은 특정사유에 한해서는 페널티 조항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가입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
- 총소득의 7.5%를 초과한 의료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
- 가입자,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위한 교육비 충당.
- 주택구입 또는 건축 및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

(생애기간 동안 \$10,00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인출 후 12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함)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이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조기은퇴,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55세 이전에 연금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5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반면 일본 개인형 DC연금에서는 중증의 장애 및 사망의 경우에만 장애급여 및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기타 사유에 의한 중도 인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법정 보장내용(고령, 사망, 폐질환으로 인한 근무 불능) 이외의 다른 경우를 위한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3. 소결

지금까지 해외의 자영업자 대상 소득보장체계, 자영업자 중심 사적연금 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영업자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 측면이다. 미·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비스마르크형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전제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은 당연가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를 보이나 최근 휘룸연금과 같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 도입으로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제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 모두 차이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근로자 중심 소득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중심 사적연금 운용 측면이다. 미·일 등 선진국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102) Invesco(2015).

103) IRC sec. 72 & ERISA sec. 408(b)(1); EBRI(1997).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 대부분 국가들이 근로자가 가입하는 사적연금에 자영업자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자영업자 임의가입형 사적연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전통형 IRA, 일본 개인형 DC 등에서는 가입대상에 자영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키오플랜, 뮌헨연금 등은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방식에서 볼 때 자동가입보다 임의가입이 보다 일반적이며 자동가입형태로의 전환은 검토 단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 개인형 DC제도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납입한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월 ₩68,000까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여, 자영업자의 납입한도가 근로자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③ 영세자영업자는 전문가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해 올바른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연금상품 가입 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연금사업자가 제시한 특정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 연금자산에 대한 대출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에 특화된 Solo 401(k)제도는 SEP IRA 등 타 제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필요 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 등 선진국들은 자영업자의 사적 안전망 제고차원에서 직업적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다.

V.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제2장),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실태 및 인식(제3장), 해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운용특징(제4장)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기본방안을 모색(1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사적보장부문에 해당하는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① 자영업자의 특수성, ② 근로자와의 형평성, ③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설정(2차)하고자 하였다.

가. 기본방안의 모색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자영업자의 약 80%가 노후대비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로 이루어져 있어 연금제도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공적연금가입률이 낮고 사적연금의 가입저조로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더불어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⁰⁴⁾ 즉,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104) 여기에서의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은 패러다임적 개혁이나 개선을 의미하지 않고 파라메타적 개혁이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사적연금체계 개선차원에서 검토함.

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처럼 현재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제2장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제도의 개선미흡으로 형식적인 소득보장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 V-1〉 기본방안의 모색

환경변화	기본방안		
• 자영업자 비중 증대 - 80% 이상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 소득보장 체계구축	사적 보장 (2·3층)	•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구축) - 자영업자 특수성·형평성 고려 - 영세자영업자 소득보장 초점
• 소득복지정책 소외 - 근로자 중심 정책지향		공적 보장 (1층)	• 국민연금가입 사각지대 해소 - 가입유도 및 지원정책 등
• 연금제도의 가입 저조 - 노후빈곤의 위험증가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소득보장(1층)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선행되고, 사적소득보장(2층·3층)측면에서 자영업자 특수성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세부방안의 설정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적소득보장 부문인 국민연금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¹⁰⁵⁾ 사적소득보장체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먼저 자영업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러한 직업적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사적연금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

105)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자영업자의 공적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즉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현 운용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검토하고자 함.

다는 점이다.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연금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적연금의 가입 증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비재무적 지원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무적 지원, 즉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⁰⁶⁾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와의 세제 등 다양한 제도 지원의 총량을 파악한 후 지원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결국 비재무적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특수성, 재무적 측면에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반영한 사적연금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은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고액소득계층의 자영업자 중심이 아닌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사적소득보장체계가 이루어져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2〉 세부방안의 설정

구분	세부방안	
사적소득보장 체계개선 (공적연금 현체제 가정)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 유도 •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재정지원 •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 가입자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이처럼 자영업자의 특수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과제를 모색한 결과, 〈표 V-2〉에서 보는 것처럼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유도,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106) 형평성 문제는 다른 부처 제도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지원사업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연금제도상의 재무적 지원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으로 함.

영세자영업자 중심 재정지원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⁷⁾ 이를 제2절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세부 개선방안

가.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 유도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노후준비는 오히려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보다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의가입형태로 퇴직연금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금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표 V-3〉 참조).

〈표 V-3〉 사적연금(퇴직연금) 가입유도

현황	방향
• 현재, 근로자와 동일한 임의가입형태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률 저조 예상 - IRP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부족 *임의가입→자동가입→강제가입 추세	• 자영업자 소득보장차원에서 자동가입 검토 - 가입은 자동으로 하되 탈퇴는 임의형태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인 점 감안 • 검토방안 - 제도도입 초기부터 적용(1안) - 일정기간 유예 후 적용(2안)

또한 근로자의 경우 노사 협의하에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는 가입여부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107) 제4장의 주요 선진국의 소득보장체계 및 사적연금 운용특징 등을 참조하여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측면에서 세부방안을 설정함.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달리 정책적으로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요구된다.¹⁰⁸⁾ 물론 미·일 등 선진국은 대체로 자동가입형태보다는 임의가입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자동가입¹⁰⁹⁾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임의가입형태를 유지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다. 다만 칠레는 자영업자에 대해 강제가입형태를 띠고 있으며, 영국 등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자동가입형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 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선진국들은 자동가입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연금가입을 촉진하고 은퇴 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¹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제도도입초기부터 자동가입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예: 2~3년) 임의가입 시행 후 자동가입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중도인출(대출 포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근퇴법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중도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시 등으로 중도인출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108) 영국의 NEST제도의 경우, 자동가입제도 도입 후 가입률이 뚜렷하게 증가함.

109) 자동가입은 상품, 정책 또는 법률 관계가 기능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자, 관련자 또는 당사자들이 그것들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됨.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연기하는 미루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기본상품을 설정함.

110) Lauren E. Willis(2013).

〈표 V-4〉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현황	방향
• 자영업자의 경우 긴급사업자금 필요성 증대 - 노란우산공제: 생활안정, 사업재기 목적 • 가입자와 자영업자의 중도인출요건 동일 -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요양 시 등으로 한정 • 미국 등 자영업자 특수성 고려, 예외인정 - Solo 401(k)	• 근로자와 차별화된 중도인출 요건 마련 - 자영업자 중도인출요건으로 긴급자금 포함 등 • 중도인출 요건의 이원화 검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필요

그러나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므로 미국의 Solo 401(k)를 참조하여 중도인출 요건의 차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허용으로 향후 노란우산공제와의 가입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 노란우산공제¹¹¹⁾와 같이 사업재기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즉 중도인출요건을 이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자영업자의 경우 투자정보를 접할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이해도가 부족하고 운용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계형 자영업자인 영세자영업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운용되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대기업의 근로자에 비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약 35%는 가입자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가입자 교육에 그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¹¹²⁾ 문제는 근로자에

111) 노란우산공제는 생계위험 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목적(폐업 등)으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대한 가입자 교육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이 훨씬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2017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표 V-5>에서 보는 것처럼 가입자 교육을 근로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보다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입자 교육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표 V-5>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현황	방향
•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이해도부족 - 투자정보 및 지식의 비대칭성 심화 • 근로자보다 형식적 교육가능성 농후 -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35% 교육경험 전무	• 가입자 교육의 강화 및 의무화 검토 -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에 초점 • 자영업자특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마련 -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일본 참조) - 집합교육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활용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속성에 부합한 가입자 교육이 되도록 별도의 가입자 교육체계(교육 내용 및 방법)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자영업자 스스로 모든 운용책임을 지는 적립형 IRP이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해 자칫 투자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안정적 수익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1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5. 7)를 참조.

〈표 V-6〉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방향
• 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확대예상 - 투자상품 다양화에 따른 운용리스크 증대 • 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부재 - 현재 대표상품제도만 존재 • 영국 NEST의 경우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일본 검토	•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도입 검토 - 자영업자 직업별 속성 및 투자성향 고려 -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 및 요건 강화 • 수탁자책임 명확화 및 리스크감독 강화 - 자동형 퇴직연금도입의 보완조치강구

즉, 자영업자의 직업별 속성 및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형 퇴직연금(디폴트 투자상품)¹¹³⁾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수탁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디폴트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표 V-6〉 참조). 그 이유는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이해 상충문제로 투자손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배분의무 등과 수탁자 책임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탁자 책임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¹¹⁴⁾의 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리스크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3) 디폴트 옵션(디폴트 투자)은 가입자가 별도 상품가입 없이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형태인데 반해, 대표상품은 일단 가입자가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14)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제도운용과 관련하여 수탁자나 투자매니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임.

마.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재정지원

제도의 편리성 제공 등과 같은 비재무적 지원이 아닌 재무적 지원(세제혜택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동일한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표 V-7〉 영세자영업자 중심 재정지원

현황	방향
•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세제혜택부여 -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미흡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미흡	•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 동일한 연금제도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 • 일본식 세제혜택 차등화는 신중 검토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시 정부재정지원 -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사업주부담금 10% 등 • 영세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 시 미적용(배제)	•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준하는 재정지원 - 정부의 재정지원에 영세자영업자 포함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자영업자 세제혜택 등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는 일본식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제혜택 차등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은 ① 저소득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월소득 140만 원 미만)을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② 사업주(30인 이하 사업장)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

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의 영세자영업자 가입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개인연금제도의 차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인보험의 성격인 노란우산공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자영업자에 특화된 개인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키오플랜(Keogh Plan), 독일의 뮌헨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에 당연가입하는 형태인 반면, 독일은 영세자영업자 일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2층인 퇴직연금(직역연금)에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인 뮌헨연금을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V-8〉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현황	방향
• 현재, 자영업자에 특화된 개인연금 부재 -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인연금 운용 - 단, 개인보험성격 노란우산공제운용(일본식) • 미국 등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운용 - Keogh Plan(미국), 뮌헨연금(독일) - 국민연금 가입형태에 따라 국가별 차이존재	• 단기적으로 현행 체제 유지 - 국민연금가입 저조, 퇴직연금 미시행 등임을 감안 • 장기적으로 미국식 검토 필요성 존재 - 직업별 속성에 따른 개인연금 차별화 - 국민연금당연가입, 사적연금임의가입 -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운용국가(유형2)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한 개인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 가입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임의가입대상인 점, 그리고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연금체계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식 방식보다는 미국식 방식을 보다 지향할 필요가 있다.

사. 가입자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설문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7년 7월부터 가입이 허용되는 적립형 IRP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먼저 자영업자 관련 단체(예: 요식업)를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이해도 제도를 위한 별도의 설명 및 교육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라는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연금과 노란우산공제 등과 비교 시 노후보장차원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자영업자의 기준 및 정의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는 노후빈곤 위험 증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노후빈곤에 처할 위험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은 근로자와 달리 스스로 부담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준비실태, 주요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소득보장체계는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사적연금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연금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적연금의 가입 증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비재무적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특수성, 재무적 측면에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반영한 사적연금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자동가입제도 등)가 요구된다. 임의가입형태로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연금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도가입 유도를 위한 자동가입형태로는 2017년 7월 제도도입초기부터 적용하는 방안, 일정기간 자율임의가입형태를 시행한 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2017년 7월 이후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의 개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 긴급자금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중도인출요건의 이원화)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 강화 및 자동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입자 교육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속성에 부합한 가입자 교육이 되도록 별도의 가입자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직업별 속성 및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동일한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같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제혜택 차등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자영업자명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합의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2016), 『정년연장의 노후소득개선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 방향』, 보험연구원.
- 고광수 외(2006),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 고용부 연구용역보고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5』.
- 김경아 · 한정림(2011),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김상진(2009),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2).
- 김수완 · 김상진(2012), 「자영업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 행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 김영미(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_____(2012),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영란(2011), 「해외 IRA 성장과정 고찰을 통한 국내 IRA 시장 전망」, 하나금융그룹.
- 김원식(2015), 「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연구: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 『리스크관리 연구』, 제26권 제3호.
- 김재현(2011),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관리계약 개선 연구: 영국과 독일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 _____(2014),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형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 남재우(2014), 「퇴직연금 디폴트투자 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2011),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보험연구원.
- 박여영(2010), 「해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조사」, 한국투자증권.
- 박종서 · 이상영 · 이삼식 · 손창균 · 신현웅 · 정홍원 · 박수지 · 신화연 · 김지연 · 윤여원 · 이소정 · 홍인정(2012), 「저출산 고령화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

- 태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박희진(2015), 『국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은퇴백서.
- 석재은 · 김수봉 · 이정우 · 지은정(2004), 「OECD 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I)」, 보건사회연구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 신화연(2012),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 보건복지포럼.
- 이상우 · 오병국(201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이새롬(2010), 「독일 퇴직연금제도」, 『하나 퇴직연금 Brief』,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이인호 · 신관호(2012),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 이태호(2009),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고용부 용역보고서.
- 전형배(2012), 「영국의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 -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43호, 한국노동법학회.
- 정기혜 · 김용하 · 이지현(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독일편」, 보건사회연구원.
- 정승희(2009),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2014),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 방안』,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통계청 보도자료(2013. 6. 21), “가계금융 · 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 홍범교 · 박수진 · 정경화(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 · 송은주 · 박수진(2013),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원구(2014), 「영국의 퇴직연금자산 인출 정책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 ABI(2014), The UK Annuity Market: Facts and Figures.
- AON(2014), Help in Defined Contribution Plans - 2006 through 2012.

- Arbeitsgemeinschaft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2015), The Occupational Pension Landscape in Germany.
- Axel Börsch-Supan(2015), Riester Pensions: the Matching Defined Contribution Savings Scheme in Germany.
- Better Finance(2015), Pension Savings: The Real Return.
- Choi(2009), "Pension Schemes for the Self-Employed in OECD Countri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Social.
- EBRI, Fundamentals of Employee Benefit Programs, Fifth Edition, EBRI-ERP Publication.
- Eduardo Rodriguez-Montemayor(2014), Investment Choice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olicy Issues, INSEAD Working Paper.
- European Commission(2010), "Social protection of the self-employed",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MISSOC.
- GAO(2014), 401(K) PLANS - Improvements Can Be Made to Better Protect Participants in Managed Accounts.
- Ginn, Jay, Fachinger, Uwe, and Schmahl, Winfried(2007), "Pension reform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older people in Britain and Germany", *MPRA Paper*, No. 3189.
- Heinz P. Rudolph(2016), "Building Voluntary Pension Schemes in Emerging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16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 IPE(2016), Danish government proposes mandatory pension savings.
- IRS(2016), IRS Publication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 Kornelia Hagen, and Axel Kleinlein(2012), "Ten Years of the Riester Pension Scheme - No Reason to Celebrate", *DIW Economic Bulletin*.
- Lauren E. Willis(2013), "When Nudges Fail Slippery Default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NEST Corporation(2015), Looking after members' money.

_____ (2016), NEST's investment approach.

Nina Paklina(2014), "Role of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in Automatic Enrolment", *IOPS Working Papers on Effective Pensions Supervision.*

Oxera(2013), Study on the position of savers in private pension products.

Pensions Policy Institute(2016), The Pensions Primer: A Guide to the UK pensions system.

Schmaehl, Winfried(2004), Paradigm Shift in German Pension Policy(in: Rein, Martin and Schmaehl, Winfried 2004: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Cheltenham, Edward Elgar: 153-204).

Whitehouse, Edward(2005),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ensions", *The World Bank discussion Paper.*

厚生労働省(2015), 厚生労働白書. 平成27年版.

_____ (2016), 年金制度のポイント.

독일 보험협회(<http://www.gdv.de/>)

독일 연방노동사회부(www.bmas.de/)

미국 사회보장국(<https://www.ssa.gov>)

일본 기업연금연합회(<https://www.pfa.or.jp/index.html>)

일본 후생노동성(www.mhlw.go.jp/)

부록 I. OECD 국가의 자영업자 연금체계

OECD(2009)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근로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와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형태로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동일 제도 내에서 적용을 하는 형태로 오스트리아, 한국, 포르투갈,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자영업자 대상 연금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형태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유형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연금가입제도가 없는 형태로 멕시코가 대표적인 예이다.

〈부록 그림 I-1〉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대상 연금체계 분류



부록 Ⅱ. 미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부록 표 Ⅱ-1〉 미국의 사회보장세율 변화 추이

(단위: %, 달러)

연도	근로자·고용주(50%부담)			자영업자			최대 과세소득(\$)	
	OASDI	HI	합계	OASDI	HI	합계	OASDI	HI
1937	2.0	—	2.0	—	—	0.0	3,000	—
1951	3.0	—	3.0	2.3	—	2.3	3,600	—
1955	4.0	—	4.0	3.0	—	3.0	4,200	—
1960	6.0	—	6.0	4.5	—	4.5	4,800	—
1965	7.25	—	7.25	5.4	—	5.4	4,800	—
1970	8.4	1.2	9.6	6.3	0.6	6.9	7,800	7,800
1975	9.9	1.8	11.7	7.0	0.9	7.9	14,100	14,100
1980	10.16	2.1	12.26	7.05	1.05	8.1	25,900	25,900
1984	11.4	2.6	14.0	11.4	2.6	14.0	37,800	37,800
1985	11.4	2.7	14.1	11.4	2.7	14.1	39,600	39,600
1990	12.4	2.9	15.3	12.4	2.9	15.3	51,300	51,300
1993	12.4	2.9	15.3	12.4	2.9	15.3	57,600	무제한
1995	12.4	2.9	15.3	12.4	2.9	15.3	61,200	
2000	12.4	2.9	15.3	12.4	2.9	15.3	76,200	
2005	12.4	2.9	15.3	12.4	2.9	15.3	90,000	
2010	12.4	2.9	15.3	12.4	2.9	15.3	106,800	
2015	12.4	2.9	15.3	12.4	2.9	15.3	118,500	
2016	12.4	2.9	15.3	12.4	2.9	15.3	11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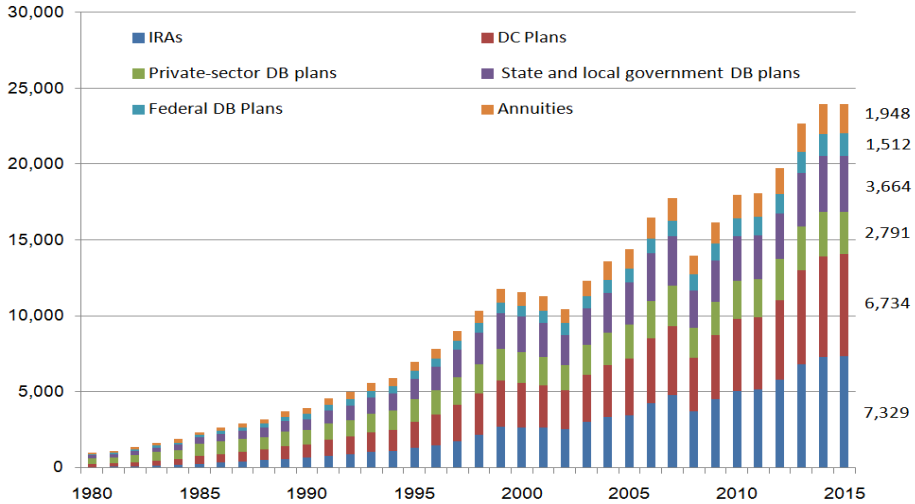
주: 1) DI: 장애보험, HI: 건강보험, OASI: 노령 및 유족보험, OASDI: 노령, 생존자 및 장애보험.

2) 1993년 메디케어에 대한 과세소득상한은 1993년 폐지되고 무제한임.

자료: SSA(2016); Social Security Administrator,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0.

〈부록 그림 II-1〉 미국의 퇴직급여시장 자산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16).

〈부록 표 II-2〉 미국의 IRA제도 운영현황

(단위: 백만 명, %, 십억 달러)

구분	제도시행 연도	가입자	가입률	자산
Traditional IRA	1974(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30.4	24.4	6,174
Traditional IRA	1978(Revenue Act)	6.7	5.4	495
SAR-SEP IRA	1986(Tax Reform Act)	20.3	16.3	660
SIMPLE IRA	1996(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Roth IRA	1997(Taxpayer Relief Act)			
계	-	40.2	32.3	7,329

주: 2015년 기준임.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16).

부록 Ⅲ.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현황

〈부록 표 Ⅲ-1〉 취업형태별 공적연금 가입·수급현황(2013년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대상	가입자	비가입자		
				수급자	기타	소계
60세 ~ 64세	취업자	4,946	2,434	2,021	492	2,512
	- 자영업주 ¹⁾	722 (100)	136 (18,8)	416 (57,6)	171 (23,7)	586 (81,2)
	- 가족종업원 ²⁾	343	51,292	72	72	220
	- 회사원·공무원 ³⁾	3,475	2,159	1,121	195	1,316
	- 기타 취업자	406	88	264	54	318
	비취업자 및 미상	4,293	506	3,186	601	3,787
	합계	9,239	2,940	5,207	1,092	6,299
65세 이상	취업자	6,042	582	5,234	226	5,460
	- 자영업주	2,076 (100)	69 (3,3)	1,927 (92,8)	80 (3,9)	2,007 (96,7)
	- 가족종업원	922	16	878	28	906
	- 회사원·공무원	2,226	442	1,717	68	1,784
	- 기타 취업자	818	55	713	50	762
	비취업자 및 미상	25,292	385	24,376	531	24,906
	합계	31,333	967	29,610	756	30,366
20세 ~ 59세	취업자	51,384	51,572	—	—	—
	- 자영업주	3,212 (100)	3,152 (98,1)	—	—	—
	- 가족종업원	1,850	1,822	—	—	—
	- 회사원·공무원	44,353	44,230	—	—	—
	- 기타 취업자	2,419	2,368	—	—	—
	비취업자 및 미상	11,872	11,594	—	—	—
	합계	63,707	63,166	—	—	—

주: 1) 자영업주: 개인경영의 상인, 공장주, 농업주 등의 사업주, 의사, 변호사, 저술가 등.

2) 가족종업원: 자영업주의 가족에서 그 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회사원 및 공무원: 정규직,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임시로 사용되는 자.

자료: 厚生労働省年金局(2015).

〈부록 표 Ⅱ-2〉 일본의 취업형태별 공적연금 가입현황(20~59세 대상, 2013년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고용형태)	대상 인원	가입자					비가입자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소계	제1호 미가입자	기타 비가입자	소계	
			후생연금	공제조합						
취업자	51,834	11,775	31,198	4143	4,456	51,572	108	154	262	
- 자영업주 ¹⁾	3,212 (100)	2,750 (85.6)	303 (9.4)	-	303 (9.4)	3,152 (98.1)	35 (0.2)	24 (0.3)	60 (0.5)	
- 가족종업원 ²⁾	1,850	1,507	172	-	172	1,822	15	14	28	
- 회사원 · 공무원 ³⁾	44,353 (100)	5,866 (13.2)	30,513 (68.8)	4133 (9.3)	34,645 (78.1)	44,230 (99.7)	44 (0.1)	79 (0.2)	124 (0.3)	
- 기타 ⁴⁾	2,419	1,652	211	10	220	2,368	14	36	51	
비취업자 및 미상	11,872	6,103	369	85	454	11,594	80	198	278	
합계	63,707	17,878	31,567	4228	35,795	63,166	189	352	541	

주: 1) 자영업주: 개인경영의 상인, 공장주, 농업주 등의 사업주와 의사, 변호사, 저술가, 행정종사자 등(투자를 하고 있는 자영업주도 포함).

2) 가족종업원: 자영업주의 가족에서 그 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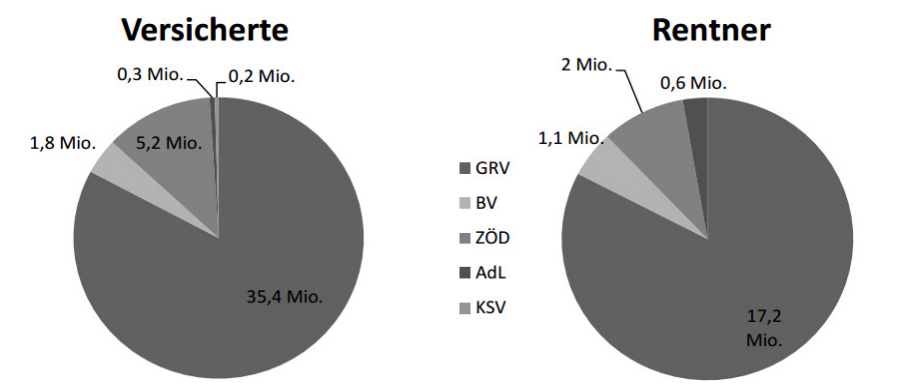
3) 회사원 및 공무원: 정규직과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임시로 사용되는 자.

4) 기타: 자영업주, 가족종업원, 회사원 · 공무원 이외의 취업자(예: 부업, 일용직, 임시 아르바이트 등).

자료: 厚生労働省年金局(平成27年12月), 平成25年公的年金加入状況等調査結果の概要.¹¹⁵⁾

부록 IV. 독일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부록 그림 IV-1〉 공적연금제도 가입자(Versicherte) 및 수급자(Leistungsempfänger) 현황



주: 1) 2012년도 기준임.
 2) GRV: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BV: Beamtenversorgung, ZÖD: Zusatzversorgung im öffentlichen, Dienst, AdL: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KSV: Künstlersozialversicherung.
 자료: BMAS(2013), Alterssicherungsbericht 2012.

〈부록 표 IV-1〉 독일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별 지출총액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구서독	구동독
국민연금(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75	71	98
기업연금(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6	8	0
공공부문 보충연금(Zusatzversorgung öffentl. Dienst)	3	3	1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	13	16	1
농민연금(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1	1	0
자영업자 공제기금(Berufsständische Versorgung)	1	2	0

주: 2012년 기준임.
 자료: BMAS(2013), Ergänzend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2 gemäß § 154 Abs. 2 SGB VI(Alterssicherungsbericht 2012).

〈부록 표 IV-2〉 독일 기업연금 운영형태

구분	직접 급여보장 (Direktzusage) : Book Reserve	간접 급여보장: mittelbare Leistungszusage			
		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 Direct Insurance	연금금고 Pensionskasse	지원금고 Unterstützungskasse : Support Fund	연금펀드 Pensionsfonds
제도개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연금을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보장을 협약하고, 이와 관련하여 외부급여기관에 상응하는 보험료 혹은 부담금을 납입			
제도유형	DB형	DB형	DB형	DB형	DB형 / DC형
특징	기업은 퇴직연금 충당금을 사내 적립하며, 이를 연금보험협회가 보증	기업 보험기관과 계약을 통해 근로자 퇴직연금 보험에 가입	다수 기업들의 퇴직연금 설계 및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 운용기관 설립	기업은 독립외부기관에 급여를 적립하고 해당 기관은 운용 담당	자산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
자산비중(%)	52.9	11.1	23.8	7	5.2
투자규제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최저수익 보장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적립형태	사내적립	사외적립	사외적립	사외적립	사외적립
배분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연금형태만 가능

주: 1) 100% 일시금 지급은 금지됨.

2) 2011년 자산기준임.

자료: 김재현(2011),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관리계약 개선 연구: 영국과 독일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이새롬(2010), 「독일 퇴직연금제도」, 하나 퇴직연금 Brief, 한나금융경영연구소; ABA(2015).

〈부록 표 IV-3〉 Riester 연금의 계약건수 추이

(단위: 천 건)

연도	생명보험 계약	은행 저축계약	투자회사 펀드계약	주택연금	합계
2001	1,400	—	—	—	1,400
2002	3,081	150	174	—	3,405
2003	3,534	197	241	—	3,972
2004	3,807	213	316	—	4,336
2005	4,859	260	574	—	5,693
2006	6,562	351	1,231	—	8,143
2007	8,454	480	1,922	—	10,856
2008	9,285	554	2,386	22	12,247
2009	9,906	634	2,629	197	13,365
2010	10,485	703	2,815	460	14,464
2011	10,988	750	2,953	724	15,416
2012	11,059	781	2,989	953	15,781
2013	11,013	805	3,027	1,154	15,999
2014	11,033	814	3,071	1,377	16,296
2015	10,989	804	3,125	1,564	16,482

자료: BMAS(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정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정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김 동 겹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dg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55-8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